실마리가 풀리지 않는다면, 부시 행정부 또는 차기 행정부가 군사적 개입을 포함한 다양한 대책을 마련할 가능성이 높다. 그런 점에서 미국이 내걸고 있는 인권문제가 단순히 인권법이나 자유화법에 머물고 말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어쩌면 지극히 단순한 생각일지도 모른다.

「북한난민구호법」(2003.10)과 「북한인권법」(2004, 계류 중)의 발의자인 브라운백 미 상원의원(공화당)의 발언들에서 미루어 볼 때 이들 법안의 제정목적이 궁극적으로는 반미적인 김정일 정권의 교체와 미국적 가치의 확산에 두고 있기 때문이다. 브라운백 의원은 2004년 4월 미국 내 '북한자유의 날' 행사에서 김정일 정권의 타도를 주장하면서 「북한인권법」의 연내 입법화를 주장하고 있다.

비록 이들이 북한난민에 대한 구호와 북한주민의 인권 보호와 증진에 초점을 맞춘 「북한인권법」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이는 현재 진행 중인 북핵 6자회담 등 현안과 관련하여 '전술적으로 후퇴'한 것일 뿐 사태추이에 따라 언제든지 이 시나리오로 이행할 것임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북한인권법」의 통과 이후 북핵사태의 추이와 관계없이 북한의 체제불안이 지속될 경우 반체제단체를 육성하기 위해 가칭 「북한해방법」(North Korea Liberation Act)을 제정하여 체제붕괴를 기도할 가능성도 예상해 볼 수 있다. 이 경우 인권문제를 북핵문제 등 타현안의 해결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게 될 것이다. 이 법안이 제정될 경우, 몽골이나 중국, 러시아 내에 망명정부를 설립하고 이들에게 군사자문이나 군사훈련을 실시할 수도 있을 것이다. 실제로 2003년 10월 황장엽 전 노동당비서의 방미 시 일부 동포 단체들이 '망명정부' 선언을 요구한 것은 이 구상이 전혀 근거가 없는 것이 아님을 보여준다.[49]

「북한해방법」의 성립조건으로는 다음이 예상된다. 북한의 핵실험 및 핵보유국 선언 등 북핵문제가 악화되었을 경우 미국정부는 공식적으로 북한정권의 타도를 내세우거나, 적어도 군사적 개입을 표방하면서 북한 반체제단체를 지원하는 캠페인에 착수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같은 군사적 개입을 공식화하는 법안이 미국 내에서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적어도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결의안이 나오는 등 국제적인 동의가 필요할 것이다.

<표-4> 북한 인권문제의 발전전망: 세 가지 시나리오

	제1시나리오 (인권문제)	제2시나리오 (인권+PSI, 반테러)	제3시나리오 (인권+체제전환)
목 적	북한난민에 대한 구호 및 북한주민의 인권 보호와 증진	인권을 내세워 대량살상무기 확산 및 테러지원국가에 대한 응징	반미정권의 교체와 미국적 가치의 확산을 통한 팍스 아메리카나의 구현
주 요 정책수단	대북 인도적 지원 북한주민의 인권단체 지원·육성	o 반확산에 대한 국제적 협력 o 북한 인근해역에서 PSI훈련 실시	몽골(/중국,러시아) 내 망명정부 설립 및 군사훈련 지원
접근방식	인권문제와 타현안의 '분리' 접근	인권문제와 타현안의 '연계'접근	인권문제를 타현안 해결의 '수단'으로 활용
법률형태	「북한인권법」	「북한자유화법」	「북한해방법」(가칭)
국제동의	가능 -유엔 대북 인권결의	국제법 테두리 내에서 제한적 동의 가능 -유엔 대북 인권결의 및 유엔 반확산 결의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결의안이 필요

V. 예상문제점 및 우리의 대응방향

1. 미국의 대북 개입주의 정책전망과 예상문제점

(1) 대북 개입주의 정책전망

미국의 신개입주의 정책은 다른 나라의 인권개선과 민주화 나아가 체제전복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 강제조치(군사적 개입)를 취하기도 한다. 반정부·반체제단체를 조직하고 지원하며, 이들 단체에게 군사자문이나 군사장비, 훈련을 제공하기도 한다. 상황이 악화되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미국이 직접 나서 제한된 군사행동을 펼치기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전면적인 군사침공을 단행하여 정권교체를 시도하기도 한다. 이와 같은 10단계 개입주의 정책수단을 미국의 신개입주의 관련법에 적용해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쿠바 자유·민주연대법」(1996)을 보면, 이 법은 여론조성과 방송, 지원반대뿐만 아니라 봉쇄조치를 포함하는 등 비록 비군사적인 개입 위주로 되어 있으나 매우 높은 개입수준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반체제· 반정부단체가 아닌 민주주의·인권단체가 대상이기는 하나 이들 단체에 대한 지원을 규정하고 있다.

「이라크해방법」은 비군사적인 개입조치로는 여론조성이나 방송은 낮은 단계에 머물러 있으나, 반정부단체의 조직과 지원, 그리고 이들에 대한 군사장비 제공과 군사훈련 등 군사적인 개입조치를 담고 있어 매우 높은 수준의 개입의지를 드러내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에 비해 「이란민주주의법」은 이란국민들에게 이슬람공화정에 반대하고 의회민주주의를 고취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 이를 위해 현재 시행중인 '라디오 파르다'(Radio Farda)를 확대·개편하고 페르시아어 홈페이지를 개설하는 등 낮은 단계의 비군사적 개입의 형태를 띠고 있다.

「북한자유화법」의 경우, 자유화법안이 낮은 단계의 봉쇄조치를 담고 있다는 점에서 「북한인권법」과 차이가 있으나, 여론조성이나 '미국의 소리'(Voice of America), '자유아시아라디오'(Radio Free Asia) 방송의 확대[50], 조건부 대북지원, 대북 민주주주의·인권단체에 대한 지원 등을 규정하고 있는 점에서는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 「북한인권법」의 경우는 타현안과 분리하여 북한인권문제에 접근하고 있다는 점에서 '제1시나리오'에 근거하고 있지만, 「이란민주주의법」과 비교해 볼 때는 비군사적 부문에서 비교적 높은 미국의 개입의지가 드러나 있다.

그리고 두 법안 모두 표면적으로는 인도주의적인 성격을 띠고 있으나, 군사적인 조치로 발전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특히 「북한자유화법」의 경우는 탈북난민이나 망명자들에 대한 미국 입국허가조건 및 영주권 부여조건의 완화 등은 북한주민들의 탈북을 조장할 수 있으며 또한 미국 내 정착한 탈북난민이나 망명자들이 중심이 되어 반북·반체제

49 왕길환, "탈북자들의 미 망명신청 실태와 배경", 『연합뉴스』 2004년 7월 4일.

50 이와 별도로 한국 내 탈북자들이 중심이 되어 인터넷 라디오 '자유북한방송'(대표 김성민, www.freenk.net)을 개국하였는데, 2004년 4월 20일부터 매일 1시간씩 방송을 하고 있다.

단체가 구성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럴 경우 미국이 이들 탈북자단체를 재정적으로 지원하고 나아가 군사장비나 훈련을 제공하는 '군사자문'의 형태로 발전되는 '제3시나리오'로 발전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상의 내용을 간단한 표식으로 나타낸 것이 <표-5>이다.

<표-5> 미국의 신개입주의 관련법과 '개입수위'

쿠바 자유·민주연대법	○	○	○	○	○					
이라크 해방법	○	○				○		○		?
이란 민주주의법		○								
북한자유화법	○	○	○	○		△		?		
북한인권법	○	○	○	○						
한반도 평화·안전법		○		○						

※ '봉쇄' 중 ○는 전면적인 경제봉쇄, △는 PSI에 따른 제한적 봉쇄를 의미하며, '?'는 명문화되어 있지는 않으나, 이미 나타났거나 나타날 가능성이 있는 개입형태

(2) 예상문제점

「북한자유화법」은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에 참여할 것을 권고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북한인권법」은 비인도적 지원에 대해서는 이산가족상봉과 일본인 납치문제 해결을 조건으로 부여하고 있다. 「북한자유화법」과 「북한인권법」은 물론 가장 온건하다고 볼 수 있는 「한반도 평화안전법」 초안에서조차 역점사업은 '대북 방송'과 '북한인권단체'에 대한 지원이다. 여기서는 북한관련 3법의 공통점과 차이점에 유의하면서 예상되는 문제점들을 살펴보기로 한다.

첫째, 북한의 반발과 북핵 6자회담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은 1981년에 두 개의 국제인권규약에 가입하였지만, '우리식 인권'을 주장하며 국제인권규약의 준수 및 이행을 성실히 수행하지는 않았다. 북한정부는 1983년 10월 24일 유엔 인권이사회에 1차 인권보고서를 제출하고 1984년 5월 2일에 보완보고서를 제출하였으며, 약 12년이 지난 2000년 3월에야 정치적·시민적 권리규약에 대한 2차보고서를 제출하였다. 이어 북한정부는 2003년 11월 19일과 20일 이틀 동안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의 이행에 관한 심의를 받았다.[51]

이처럼 북한이 인권에 관한 국제규약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것은 사실이지만, 북한은 북한자유법 또는 북한인권법이 미 의회에서 통과될 경우 크게 반발할 가능성이 높다. 북한법령들은 북한어린이들의 해외입양을 금지하고 있어 이들의 미국행을 강행될 경우 북

51 (사) 좋은 벗들, 앞의 책, 22~23쪽.

한당국의 커다란 반발이 예상된다.[52] 또한 북한자유법안과 북한인권법안은 재미동포 이산가족들의 북한 방문과 이산가족 상봉을 저해하고, 북한에 거주하는 가족들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다.

무엇보다 이러한 특별법 제정에 대해 북한당국이 내정간섭이라고 비난하면서 일체의 대미 대화통로를 닫아버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럴 경우 현재 진행 중인 북핵 6자회담과 북미대화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일부 국내 NGO의 개입으로 남북관계에도 차질을 가져와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킬 가능성이 있다.

둘째, 중국정부의 우려와 재중 탈북자에 대한 탄압증대가 예상된다. 중국정부는 2003년 9월 북한과의 국경지대 경비병력을 무장경찰에서 정규군인 인민해방군으로 교체한데 이어 지난 6월말 탈북자의 급증 방지와 불법월경 및 범죄방지를 위해 북한과 「국경협력협정」을 체결하였다. 이것은 북한의 경제난이 더욱 악화되면서 북-중 국경을 넘는 탈북자들이 급증하고 있고, 이를 체포하기 위한 북한군의 월경과 범죄 행위도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내려진 조치라는 분석이 있다. 중국은 옌볜(延邊) 조선족 자치주를 중심으로 탈북자와 북한군의 월경을 저지하기 위해 특수부대를 창설했다는 설도 나돌고 있다.

이같은 분석 외에 북-중 국경협력협정체결 목적중 하나가 국경지구의 경제건설 촉진이라는 주장도 있다. 이는 지난 7월 1일 장치웨(章啓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정례 브리핑에서 밝힌 것으로, 김정일 위원장이 강력히 추진하다 제동이 걸린 신의주 특구개발계획의 재추진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북한이 신의주특구를 중국 국경도시인 단둥(丹東)과 연계해 개발하려면 많은 노동자가 양쪽에 몰리게 되는데 국경 관리가 허술하면 불법 월경자가 급증, 특구개발에 차질을 빚게 되고, 중국으로서도 불법월경자 처리의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이를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이다.

특히 미 의회에서 북한자유화법안이나 인권법안이 채택될 경우, 북한의 민주화와 인권개선을 위해 미국 행정부, 특히 정보기관과 보수단체 및 NGO 등이 그 목표를 달성키 위해 중국에서 활동을 확대할 가능성이 크다. 그럴 경우 주무대는 옌볜조선족 자치구나 단둥과 같은 국경지구가 될 것이다.

중국 내에서 활동하는 미국 및 외국 NGO에 대해 미국정부가 자금지원을 하게 되면 중국정부와 마찰을 빚을 수 있으며, 이는 오히려 재중 탈북자에 대한 탄압 강화를 초래할 수 있다.[53] 따라서 중국당국과 북한측은 서로 협력하여 북한관련 특별법이 제정되기에 앞서 중국내 탈북자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과 강제송환을 강화할 가능성이 높다.

셋째, 미국과 접촉한 인사들이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북한관련 3개 특별법의 공통점은 북한에 대한 단파라디오의 공급과 북한인권단체에 대한 자금지원을 규정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현재 북한사회 내에 자생적이거나 외부와 연계된 인권단체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방송시간의 연장과 단파라디오의 보급이 유력한 미국의 대북 개입수단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객관적인 사실전달이 북한의 인권개선이나 민주화의 초석이 될 것이라는 미국의 가치관에 기초한 것이다.

하지만, 라디오의 보급은 많은 위험과 부작용이 따른다. 보급된 단파라디오를 소지한 북한주민들이 외국인과의 접촉혐의로 탄압을 받게 될 위험성이 농후하다.[54] 이러한 예는

52 Hazel Smith, *op. cit.*

53 *ibid.*

54 Hazel Smith, "Brownback bill will not solve North Korea's problems", *Jane's Intelligence Review*, February

쿠바에서 찾아볼 수 있다. 2003년 4월 3일 쿠바에서 78명의 반정부인사에 대한 재판이 열려, 이들에게 평균 19년의 중형이 내려졌다. 그들에게 내려진 죄목은 '국가전복 기도'와 '반정부 활동'이었지만, 그들이 한 일은 인터넷을 통해 쿠바의 소식을 외국에 알렸거나 국제인권단체와 접촉한 것이 거의 전부였다.[55] 이처럼 미국이 「쿠바 자유·민주연대법」을 제정하여 지원을 확대하면서 '국가전복 기도'나 '반정부활동'으로 체포되는 쿠바인들이 늘어나고 있다.

북한에 대한 단파라디오 보급이 본격적으로 실시될 경우, 북한당국은 단파라디오 회수 캠페인과 함께 대대적인 가택조사를 통해 단파라디오의 불법소지자들을 단속할 가능성이 높다. 그럴 경우 북한주민의 인권개선을 위한 사업이 오히려 북한주민들에 대한 인권탄압을 자초할 가능성을 높여주는 결과를 낳을 공산이 크다.

넷째, 국내외 진보-보수 탈북지원단체간의 갈등심화가 우려된다. 미국 의회에서 추진중인 북한관련 특별법안의 추진을 놓고, 이른바 우파라고 불리는 반북단체들과 시민단체, 인권단체 간에 갈등을 보이고 있다.

반북 인권단체의 활동양상을 보면, '북한인권시민연합'과 '북한민주화네트워크' 그리고 '북한민주화운동본부' 등이 활동하고 있다. 이들 중 일부 단체는 미국의 전국민주주의재단(NED)의 지원을 받아 매년 북한인권에 대한 국제회의('북한인권 국제회의')를 조직하는 역할을 담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NED가 북한인권을 이슈화하는 목적은 북한인권을 폭로해 북한을 압박하고 기아와 식량 문제를 북한에 대한 정치적 수단으로 활용하는데 여론을 환기시키고, 탈북자 문제를 이슈화해 중국도 함께 압박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56]

이에 비해 시민단체와 인권단체들은 각종 세미나를 통해 북한자유화법과 북한인권법안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반대여론을 공론화하려 하고 있다. 2004년 3월 2일 미 의회에서 입법 추진 중인 북한자유법안에 대한 토론회에 참석한 뒤, 이들 단체들은 연명으로 「북한자유법안에 대한 한국 시민사회의 의견」을 발표하고, 미 의회와 미국 NGO들에게 의견을 전달했다.[57] 또한 4월초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인권운동사랑방, 민변, 총은벗들 등 시민단체들은 북한인권법안과 북한자유법안에 대한 의견서를 발표하고, 각 법안조항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한 의견서를 미 의회 의원들과 미국 내 평화, 인권, 의정감시 NGO에도 보냈다.[58]

미국의 탈북, 북한 지원단체에 대한 지원을 둘러싼 국내단체들 간의 대립은 「이라크해방법」을 둘러싸고도 나타났었다. 당시 클린턴 대통령은 의회에 보낸 서한에서 미국의 재정 및 군사지원을 받게 될 이라크 반정부 조직 7개의 명단을 발표했다. 미국은 지원대상 반정부단체 선정과 행동 계획들을 계속 추진했으나 일부 반정부단체들은 미국의 재정지원을 거부한다고 발표했다. 테헤란에 본부를 두고 여러 시아파 회교단체들을 거느리고

2004, p. 43.

55 지해범, "쿠바 떠나는 외국기업들", 『조선일보』 2004년 4월 26일.

56 유정애, "한미 보수세력의 '반북공생', 생명줄은 미국의 자금지원 - '2003 북한자유법안' 집중분석 보고서", 『민족21』, 2004년 1월.

57 성명서 전문은 참여연대 군축센터의 홈페이지를 참조. www.peoplepower21.org/article/article_view.php?article_id=10765

58 인권운동사랑방, "대북압박정책에 동원된 '인권' 북한인권법안, 미 하원상정", 『인권하루소식』 제2544호, 2004년 4월 1일.

있는 '이라크 회교혁명최고평의회'는 "우리는 (미국의 이라크해방법에 따른) 지원을 받지 않는다"면서 "미국으로부터 그런 지원을 받으면 이라크 재야조직의 명성이 훼손된다"고 말했다. 이 조직은 또 "이라크 국민들은 미국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지원을 받는 어떤 조직도 비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미국의 탈북 및 인권단체에 대한 재정지원이 본격화될 경우, 이를 찬성하는 단체들과 반대하는 단체들 간의 반목과 대립이 우려된다.

다섯째, 자금지원을 둘러싼 북한인권단체 간의 과당경쟁이 예상된다. 「북한자유화법」이나 「북한인권법」이 미 의회에서 통과될 경우, 국내 북한인권단체에 제공되는 자금규모가 매년 200만 달러씩 4년간 총 800만 달러에 달하기 때문에 이 자금을 제공받기 위한 국내 단체들 간에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 특히 미국의 정보기관과 보수단체 및 NGO 등이 중국뿐만 아니라 한국에서도 활동을 전개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국내 반북단체 또는 북한인권단체들이 활동을 위한 예산확보를 위해 이들과 접촉하기 위해 무분별한 과당경쟁을 벌일 가능성이 높다.

더욱 우려되는 것은 이들 단체들이 미국의 자금지원을 받기 위해 북한의 인권상황이나 정치상황을 왜곡할 가능성이다. 이러한 정보왜곡은 이라크에서도 나타났던 전례가 있다. 아흐마드 찰라비 이라크 국민회의(INC)의장은 대표적인 친미인사로서, 럼즈펠드와 윌포위츠의 도움을 받아 미국의 「이라크해방법」 제정을 위해 로비활동을 벌였으며 이 법이 제정된 이후 매월 34만 달러를 제공받았다. 그는 미 국방부와 CIA의 고문으로 활동하면서, 이라크정부가 유엔사찰을 피하기 위해 트럭에 이동 생물학연구소를 만들어 수시로 옮겨다닌다고 제보하는 등 미국의 이라크 침공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59]

찰라비는 후세인 정권 타도 뒤인 2003년 7월에 미군정 25인 과도통치위원으로 임명되었으나, 자금유용과 이란스파이 혐의가 드러나 지난 5월말 자금지원이 중단되고 가택수색을 받기도 했다. 이러한 결과는 해외 이라크 반정부단체들이 안정적인 자금지원을 제공받기 위해 특별법 제정에 앞장서고, 자신들 간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미국의 관심을 끌기 위해 정보를 과장한 데 따른 것이다.

2. 우리의 대응방향

(1) 미국의 대북 특별법이 탈북자 및 북한주민 인권문제에 국한토록 설득

미 행정부의 대북정책과 이와 관련한 미 의회의 입법활동에 우리 정부가 직접 언급하기는 곤란하지만, 다양한 대화통로를 통해 미국의 대북 개입주의정책이 탈북자 및 북한주민의 인권문제에 국한(제1시나리오)할 수 있도록 설득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미국의 대북 경제제재 및 무력개입이 북한의 인권문제 개선에 도움이 되지 않아 오히려 악화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설명해야 할 것이다.

첫째는 경제재재를 통한 인권증진의 실패가능성을 들 수 있다. 그 동안 미국의 대외 개입주의정책을 보면, 경제제재를 통해서 인권을 증진시키려는 작업이 별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따라서 경제제재가 고려되는 대부분의 경우 그보다는 인도적 개입을 통해 인권유린상황에 직접 대처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라는 사실을 알려야 할 것이다.

둘째, 무력개입에 의한 인권확산의 실패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과거 레이건 행정부 시절 미국정부의 폴란드노조에 대한 자금지원은 1989년 공산주의 통치종식을 가져왔으

59 권중혁, "권력한상 찰라비는 어떤 스파이", 『중앙일보』 2004년 5월 22일.

나, 부시 행정부의 대 쿠바, 이라크, 북한 반체제단체에 대한 지원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지 의문이다. 레이건 당시 폴란드 민족주의의 적은 구소련이었기 때문에 미국의 지원이 성공할 수 있었지만, 쿠바나 이라크·북한 민족주의의 적은 바로 미국이라는 점에서 성과에 회의적이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정부가 직접 나서기 곤란할 경우, 정부는 시민단체나 전문가그룹들을 지원하여 정부나 시민사회의 입장을 보다 적극적으로 미국 의회에 전달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재미동포 단체들이나 미국 NGO들을 설득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런 연후에 이들과 연대하여 미 의회가 제정하려는 대북 특별법의 독소조항을 삭제하고 인권문제에만 국한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2) '경제적 권리'를 강조하는 대북 유엔인권결의 수정안을 주도

대규모 인권침해가 발생할 징후를 포착하고도 유엔과 주요국들은 이를 방지하기 위한 인도적 개입을 주저해 왔다. 유엔 안보리의 경우, 유엔이 사태해결에 대한 권능을 갖는 것에 반대하는 미국과 인도주의를 내세운 개입이 자칫 자국에 대한 개입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는 중국·러시아의 반대로 제대로 역할을 수행할 수 없었다. 아시아를 비롯한 개발도상국들 역시 식민지 경험으로 인해 인도적 개입이 정치적 독립을 위협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것을 우려해 인도적 개입에 소극적이었다.

그러나 대규모 인권 침해 방지가 국제사회의 의무라는 주장이 지지를 받게 되면서, 대규모 인권재앙이 임박하였다는 증거가 있을 경우 국제사회는 인도적 개입을 통해 인권을 보호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는 것이 인정되고 있다. 문제는 국제적 인권증진 활동이 지금까지는 정치적 분야에 집중되었다는 점이다. 하지만, 인권존엄성 제고를 위해 경제적 권리의 보장을 통해 빈곤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시급하다. 경제적 권리의 강조는 국민의 기본적 필요를 충족시켜 주지 못하는 북한과 같은 경제적 빈곤국에 대한 압력 명분이 될 수 있다.[60]

우리 정부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내의 관련 부처간 협의를 거쳐 지난 4월 15~16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실시될 제60차 유엔인권위원회의 대북인권결의안 표결에서 기권하였다. 정부는 북한 핵문제 협의와 남북관계를 고려하여, 미묘한 시점에 북한을 자극할 필요가 없다고 보고 이같이 결정했으나, 지난해 대북결의안 표결에 불참한 데 대한 비판적 여론이 높았던 점을 감안해 이번에는 표결에는 참여하되 기권하는 쪽으로 입장을 정리한 것이다.

이번 유엔인권위 대북인권 결의안은 지난해 결의안 채택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인권상황이 개선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유럽연합(EU)에 의해 올해에도 재상정된 것이다. 지난해 4월16일 제59차 유엔인권위원회에서 EU 주도로 실시된 대북인권 결의안 표결에서 53개 위원국 중 찬성 28, 반대 10, 기권 10표로 통과됐지만, 우리 정부는 불참한 바 있다.

이처럼 우리 정부는 유엔 인권결의에 대해 불참, 기권과 같이 매우 소극적인 자세로 임하고 있는데, 이는 인권과 관련하여 우리나라의 국제적인 이미지에 나쁜 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정치적으로 민감한 북한의 인권문제를 거론할 수 없다면, 이를 단계적으로 해결하는 방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2005년도 제61차 유엔인권위원회 회의에서 정부는 북한인권개선을 위해 단계적인 해결방안을 담은 수정안을 주도적으로 제출할 필요가 있다. 우선 북한의 식량난을 단기적으로 극복하기 위해 국제적으로 인도적 식량, 의료, 에너지 지원을 확대하고, 그 다음 장마당의 합법화와 재산권의 보호와 같은 경제적 권리를 회복한 뒤, 정치적 권리를 회복하는 단계적 방안을 국제사회에 설득할 필요가 있다.

60 Richard Falk, *op. cit.*

(3) 국내 보-혁 대결 방지 및 탈북자단체 간의 경쟁 차단

최근 인터넷 대북방송을 둘러싸고 방송중단을 요구하는 통일연대측과 자유북한방송(www.freenk.net)측이 보-혁 갈등을 빚고 있다. 지난 4월20일 개국한 자유북한방송(대표 김성민)은 탈북자들이 운영하는 인터넷 방송국으로 매일 1시간씩 정기적으로 방송을 내보내고 있다. 처음에는 서울 장안동에 있는 북한연구소 건물에서 운영을 시작했지만, 외부 협박전화에 시달려 목동으로 옮긴 뒤 6월 11일 통일연대가 다시 방송국 앞에서 반대집회를 열자, 다시 강남에 위치한 육해공군해병대 예비역 대령연합회(회장 서정갑) 사무실로 재이사하여 7월 5일부터 현 위치에서 방송을 재개하였다.

북한자유화법이나 인권법이 미 의회에서 통과되어, 미국의 자금지원으로 탈북자들의 대북 방송이 이루어질 경우 국내 보-혁 갈등이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합법적인 테두리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대북 지원활동이나 인권단체에 대해 정부가 그 활동을 보장하고 이를 방해할 경우에는 의법조치하는 원칙적인 입장을 견지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현상은 미국 내 한인 보수단체들과 진보단체들 간에 북한자유화법과 인권법을 둘러싸고도 나타나다. 한인사회 내 기독교계 및 보수성향 단체인 이지스재단, 북한선교전략연구소, 북한자유를 위한 한인교회연합(KCC), 아태인권협회 등은 「북한인권법」의 지지활동을 벌였으며, 특히 이지스재단은 동포들을 대상으로 「북한인권법」 지지서명운동을 전개하여 5월 13일 4,600명의 서명서를 콘여스 하원 법사위 간사에게 전달하기도 하였다.

이에 대해 자주연합, 미주동포전국협회(NAKA), 노듯돌, 나성포럼 등 한인 진보단체들은 북한인권법에 반대하는 기자회견(4.29)을 열었으며, 이를 미 동부지역의 케이블 TV를 통해 방영하였다(6월 1일). 특히 NAKA회원들은 6월 9일 북한인권법안을 지지하는 대북강경파의원들을 만나 지지철회 설득활동을 벌이고, 7월 20일에는 남북한 및 미 의원들이 참가하는 '한반도 평화포럼'을 개최하여 법안의 반대여론을 확산시키고자 하고 있다.

이처럼 미 의회가 추진 중인 북한관련 특별법은 한인 보수단체들이 지지입장을 표명하고 있는 데 반해, 한인 진보단체들이 저지활동에 나섬으로써 새로운 논란대상으로 부각되었다. 결국 이같은 자유화법이나 인권법안의 추진은 재미 동포사회를 분열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미국의 지원을 받기 위해 벌써부터 국내 대북 지원단체들 간의 경쟁도 예상된다. 심지어 미 정부의 지원금을 받기 위해 대북 지원단체들이 급조될 우려가 있다. 특히 국내 단체들이 반북활동의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미 정보기관이나 보수단체, NGO등과 접촉을 시도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국내단체들이 무분별하게 미국 기관이나 단체들과 접촉하는 것을 막기 위한 여과장치가 필요하다. 물론 시민단체나 탈북지원 NGO들을 정부가 나서서 양자간의 접촉을

규제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국내 어떤 단체들이 미국 기관이나 단체들과 접촉하고 있는지는 동향을 파악해 놓아야 한다. 이를 위해서 미국기관이나 단체와 관계를 맺고 있는 국내 시민단체나 탈북지원 NGO 등이 접촉사실을 정부에 알리면 별도의 편의나 혜택을 주는 방향으로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

(4) 난민보호법 마련 및 통일부 외청으로서 난민청 신설

현재 미국에서 북한과 관련한 특별법 제정움직임은 그것이 우리의 국내법과 상충하는지를 따지기에 앞서 그 동안 우리 정부의 탈북자들의 처리방식에 문제가 없었는지를 반성하게 만든다. 북한을 탈출해 남한에 정착한 탈북자들은 북한에서의 지위와 정보 보유 정도에 따라 월50만원~90만원, 90만원~1백30만원, 1백50만원~2백만원 등 몇 단계의 보수격차를 보이고, 이 같은 정상보수 외에 반공강연, 방송출연, 인터뷰, 기고 등을 통해 월 50만원 미만, 50만원~90만원, 90만원~1백30만원, 1백30만원 이상의 부수입을 올리고 있다.

그러나 이들은 최근 정부의 정착보상금 지급규모가 삭감돼 경제적 곤란을 호소하는 사례가 많고 특히 주택자금, 교육비 등의 지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경제적조건 외에 직장과 사회활동에서 적응상의 문제에 직면하기도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61]

미 의회에서 심의중인 특별법들은 미국정부가 재중 탈북자들에게 미국 내 구난처(safe haven)를 제공하기 위해 미국에 입국시키려 해도 대한민국 헌법에 따라 한국 국적자(South Korean nationality)로 간주되어 일반 한국인과 마찬가지로 까다로운 입국절차를 밟지 않을 수 없어 이들의 미국입국에 장애요인이 되었기에 이를 해결하기 위한 성격도 갖고 있다. 따라서 이 법안은 탈북자에게 난민지위를 부여하여 미국 입국절차를 간소화하려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이와 같이 미국 내 특별법 제정움직임과 맞물려 최근 국내정착에 실패한 탈북자들이 미국으로 이주하려는 추세가 증가하고 있다. 탈북자들이 미국행에 깊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은 남북관계에 변화의 바람이 불면서 탈북자 사이에 한국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불신과 불안감이 커지고 탈북자에 대한 한국 내 정서 또한 예상 밖으로 냉랭하다는 점 등이 주된 이유이다. 또한 남한의 문화와 사회생활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해 지급받은 정착금을 모두 날려 버려 경제적 압박을 받거나 정착을 못한 채 방황하다가 막연한 동경의 대상이었던 미국을 새 탈출구로 택하는 것이다.

미국 의회의 북한자유화법이나 인권법의 제정 움직임도 국내탈북자들의 망명 욕구를 부추기고 있다. 탈북자들은 이들 법안이 제3국에 정착한 북한인들에게 미국 망명을 가능케 하고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법안 통과에 희망을 걸고 미국으로 떠나고 있다.[62]

이와 같은 탈북자문제를 우리 정부가 주도적으로 담당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부지원대책의 일관성 유지, 남한사회 적응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가치관 혼란을 극복하기 위한 전문교육기관의 설립,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익히기 위한 교육프로그램 등 탈북자에 대한 체계적 연구와 관리를 도모하고 북한체제붕괴시의 북한주민 대량유입에 대비하기 위해 「북한난민보호법」(가칭)을 제정하고 '난민청'을 신설해야 할 것이다.

61 선한승, "탈북자의 적응력 제고를 위한 제도화 방향", 『통일』 3월호, 2003 참조.

62 왕길환, "탈북자들의 미 망명신청 실태와 배경", 『연합뉴스』 2004년 7월 4일.

(작성자: 조 성 렬, ☎ 572-7090+212)

[토론문]

미국의 북한특별법안과 북한인권 문제 : 유의점

김근식(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1. 부시 행정부의 북한인권 문제제기: 유의점

○ 인권과 인권문제의 분리

- 인권은 인류보편의 가치일 수 있으나 일국이 타국에게 제기하는 인권문제는 그 자체로 '정치적 이슈'의 성격을 가짐

- 더불어 인권의 절대성과 상대주의에 대한 면밀한 검토도 필요함: 이른바 B규약(시민적 정치적 권리)와 A규약(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권리)의 상대적 중요성의 차이

○ 부시 행정부가 제기하는 북한인권문제는 미국의 대북정책 맥락에서 파악될 필요가 있음

- 대북 강경 기조 하에서 가능하면 '정권교체'까지를 염두에 둔 부시 행정부의 정책방향을 고려하면 북한인권 문제는 표면상 드러나는 인류보편적 가치의 관철 외에도 내부적으로 북한정권의 붕괴를 위한 정치적 수단으로 활용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 실제로 난민구호법안과 북한자유화법, 북한인권법이 대부분 탈북자들의 대량탈북을 조장하고 이로 인한 대북 정치공세와 북한 내부의 정치적 불안정을 의도하고 있음은 눈여겨 볼만한 대목임

- 나아가 조박사가 지적하고 있는 것처럼 가칭 '북한해방법' 등을 통해 북한의 반체제 세력 지원과 경제적 군사적 봉쇄 및 제재 나아가 군사행동까지를 정당화할 경우 이는 북한인권을 명분으로 해서 실재하고 있는 주권국가를 전복시키려는 내정간섭 혹은 주권침해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음

○ 부시 행정부의 북한인권 문제제기의 실효성

- 인권을 명분으로 한 정치적 공세가 지속되고 이를 근거로 대북 제재에 착수할 경우 실제 효과면에서 북한주민의 인권이 신장될 수 있을 것인가라는 실효성의 관점에서도 의문이 제기됨

- 봉쇄를 통해 제거대상의 교체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전략적 실효성 문제와 봉쇄를 통해 정작 고통을

당하는 측은 인권신장의 주체인 북한주민이라는 도덕적 딜레마 문제가 제기될 수 있음

○ 장기적으로 북한인권의 신장은 북한의 경제회복과 시민사회의 자생적 발전에 토대해야 할 것임

- 외부세력 특히 적대하고 있는 국가에서 북한인권을 빌미로 개입할 경우 실제적으로 북한의 정치통제와 체제안정은 더욱 강화될 수도 있음

- 오히려 북한경제의 회복과 경제발전을 통해 내적으로 시민사회가 형성되고 이를 통해 민주화 주체로서의 북한주민의 의식과 실천이 발전되는 경로를 통해야 할 것임

2. 우리 사회의 북한인권 논의: 유의점

어떤 연유에서든, 어떤 상황에서든 인권은 소중한 것이고 보장되어야 한다. 북한 역시 예외가 될 수 없고 우리 역시 마찬가지이다. 우리가 적잖은 부작용을 감수하면서까지 북한의 인권을 거론하는 것도 바로 이런 까닭에서이다. 그러나 분단상황이라는 우리의 특수한 현실을 감안할 때 북한인권에 대한 문제제기에는 몇가지 유의해야 할 점이 존재하는 것도 분명 사실이다.

(1) 정치적 의도성: 인권과 냉전적 대결주의의 함수관계

첫째는 북한의 인권문제가 혹여라도 정치적 목적이나 대북대결주의적 의도에서 논의되어서는 안된다는 점이다. 우리가 북한의 인권상황에 대해 관심을 갖는 것은 그야말로 북한주민의 보편적 인권 역시 소중한 것이기에 그들의 인권이 개선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인권문제가 본래의 목적인 인권의 개선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냉전적 대결관점을 고양시키고 남북관계 개선을 훼방놓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어서는 안된다. 만에 하나 북한의 인권을 빌미로 하여 우리 사회에 냉전적 대결의식을 고조시키고 남북대결 상황을 조장하거나 진행중인 대화결렬의 명분으로 활용하려 한다면 이는 원천적으로 봉쇄되어 마땅하다.

인류 보편의 가치로서 인권을 내걸면서 속으로는 민족파괴적인 남북대결을 유지하려는 일부의 의도는 분명 인권의 이름에 걸맞지 않는 것이다. 겉으로는 북한주민의 인권을 목놓아 외치면서 정작 식량난에 빠진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에는 눈을 부릅뜨고 반대하는 모순적 처사는 진정으로 북한의 인권을 말할 자격이 없다. 소말리아 사태와 고베 지진사태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건 없이 우리 정부의 인도적 지원을 찬성하면서 북한에 대한 식량지원만은 한사코 말리는 일부 언론과 냉전세력의 소동을 보면 그들이 제기하는 북한인권문제는 냉전주의적 대결논리를 되살리려는 정치적 의도로밖에 해석되지 않는다. 북한주민의 인권이 소중하다면서 정작 기본적 생존권의 해결을 위한 대북 지원에는 북한의 인권상황이 개선된 이후에야 가능하다는 조건을 걸어 반대하는 것은 그야말로 인권은 명분일 뿐 사실은 남북대결을 고

조시키려는 냉전논리의 정치적 술수에 다름아닌 것이다.

해마다 개최되는 북한인권 관련 국제회의가 국내 유수 언론에 의해 집중후원되고 대서특필되고 있다.[63] 평소 대북 식량지원을 앞장서서 반대하던 신문이 유독 북한주민의 인권상황에 대해서만은 열과 성을 다해 문제제기 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 사회에 북한인권이라는 이슈가 순수한 인도적 차원의 의미로만 논의되는 것이 아니고 대북 대결주의의 고양이라는 또 다른 정치적 의미로 활용되고 있다는 의구심을 갖게 한다.

(2) 신빙성과 균형성의 문제

둘째 북한인권에 대한 문제제기는 철저히 객관적인 관점에서 논의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지금까지 북한인권상황에 대한 분석과 평가는 적잖은 과장과 왜곡 그리고 주관적 편견이 개입되어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그리고 이같은 신빙성의 논란은 결국 열의 아홉이 북한인권의 진실을 이야기한다 하더라도 열의 하나가 사실이 아닐 경우 나머지 아홉의 진실마저 의심받게 될 뿐 아니라 북한에게도 반박의 빌미를 제공하게 된다는 점에서 각별히 유의해야 할 대목이다.

우선 북한 인권에 대한 기존의 논의가 갖는 가장 큰 문제점은 적잖은 부분에서 사실관계의 신빙성을 부여하기 힘들다는 점이다. 사실왜곡의 가장 대표적인 가능성은 탈북자 증언에서 비롯된다. 국내외의 각종 북한인권 보고서는 탈북자의 증언을 가장 중요한 입증근거로 삼고 있지만 현지에서의 객관적인 현장조사와 실태파악이 수반되지 않는 탈북자만의 증언은 그것이 비록 사실에 기초하고 있다 하더라도 상당부분 왜곡되거나 과장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것이 사실이다. 북한주민이 어떤 이유에서든 자신이 살고 있는 체제를 떠났을 경우 그 체제에 대한 긍정적 평가는 애초부터 기대하기 힘들고 특히 북한과 첨예한 체제대결을 벌이고 있는 남쪽으로 귀순했을 경우 그들 대부분은 북한체제에 대해 사실 이상의 부정적 증언들을 쏟아낼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실제로도 탈북자들의 증언이 과장되었거나 사실이 아닌 부분으로 판명난 경우도 종종 있어왔다.

사실왜곡의 두 번째 가능성은 자신의 선입관에 의해 북한의 인권상황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거나 심지어는 정확치 않은 설명을 하는 경우에서 비롯된다. 우리는 북한의 인권상황과 관련한 법과 제도의 설명에서 주관적 판단에 의해 부정적 평가를 내리거나 고의적으로 사실을 왜곡하는 사례들을 종종 볼 수 있다.

사실왜곡의 세 번째 가능성은 북한의 인권상황을 기술하면서 서구에 대한 기준과 북한에 대한 기준을 다르게 적용하는 이른바 '이중잣대'의 경우이다. 이 역시 북한인권에 대한 정확한 평가를 가로막는 장애가 되고 있다. 동일한 상황을 놓고 서구에 대해서는 관대한 반면 북한에 대해서는 사실 이상으로 가혹한 평가를 내리는 것은 결코 객관적인 분석이 될 수 없을 것이다.

또한 북한 인권에 대한 논의가 갖는 문제점은 서구 인권개념만을 기준으로 함으로써 비서방 국가의

63. 1999년부터 개최되었던 [북한인권시민연합] 주최의 북한인권·난민문제 국제회의가 조선일보에 의해 후원되고 대대적으로 보도되었던 사실은 결코 우연이 아닐 것이다.

문화적 차이와 조건을 외면한 채 균형적 관점을 놓치고 있다는 점이다.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를 중요시하는 사회주의의 특성을 무시하고 시민적 정치적 권리만을 인권의 주요기준으로 간주하는 것이나, 유교적 전통과 아시아적 문화에 입각한 북한의 독자적인 특성을 서구적 기준으로 비난하는 것 등은 그 대표적인 경우라 할 수 있다. 예컨대 북한의 대표적인 인권침해로 거론되는 공개처형의 경우 중국의 공개처형, 싱가포르의 태형, 미국의 전기의자 사형 등 문화의 특수성에 따른 예방범죄 차원의 고유한 행형절차의 성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마치 공정한 법절차도 거치지 않은 인민재판식 私刑으로 간주하는 것은 분명 지나친 평가라 할 수 있다. 북한체제에 대한 예단을 가진 채로 오로지 서구의 인권관점에서만 북한을 재단하는 것은 자칫 북한의 인권현실에 대해 필요이상의 부정적 평가를 내리게 만든다. 한 사회의 인권현실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밖의' 관점과 함께 그들 자신이 설명하고 주장하는 바의 '안의' 관점을 동시에 고려해야 할 것이다.

서방의 입장에서 북한의 인권상황을 맹공격하던 한 신문이 미국 정부의 국가보안법 폐지요구에 대해서는 한국의 현실과 조건을 무시한 지나친 내정간섭이라며 반발하는 모습은[64] 객관적 균형성마저 상실한 이중잣대의 전형적 사례에 불과하다. 입북자의 북한에서의 기자회견 내용은 조작된 것이라고 쉽게 치부하면서 탈북자의 증언만을 토대로 북한의 현실을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는 것도 분명 이중잣대이고 우리 정부가 우리의 인권현실을 공식발표하는 것에는 수긍하면서도 북한 정부가 외국의 인권탄압 우려에 대해 해명과 부인을 하는 것은 무조건 믿지 않으려는 태도 역시 이중잣대임에 틀림없다. 물론 우리와 다른 북한체제의 폐쇄성을 감안하면 그들이 거짓말을 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문제는 균형성을 상실한 채 이중잣대에만 익숙한 북한인권 논의가 결과적으로는 우리 주장의 신빙성과 설득력마저 의심받게 한다는 사실이다.

(3) 인권개선의 효율성 문제

셋째 북한의 인권상황에 대해 즉각적이고 전면적인 개선을 촉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실적인 측면에서는 북한사회의 전체적인 삶의 질 향상을 통해 인권상황의 점진적 개선을 유도하는 것이 보다 실효성 있는 방식일 수 있다는 점이다.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절대적 기준을 충족하는 인권보장은 하루아침에 실현되지 않았고 또 그렇게 실현될 수도 없다. 서구의 경우에도 시민적 정치적 권리의 보장을 위해서는 수많은 시간과 노력이 요구되었고 우리의 경우도 예외는 아니었다.

따라서 북한의 인권문제 역시 대북 비난과 냉전적 남북대결만을 강화하는 것으로서의 문제제기가 아니라 이제는 북한체제의 안정과 사회전체의 삶의 질 향상을 통해 인권향상을 도모하는 방식을 고려해야 한다. 정권이 불안정하면 인권침해의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처럼 일반적으로 국가안보와 인권이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것이고 보면[65] 북한체제의 안정이 오히려 인권 향상의 조건이 될 수 있다.[66]

64. '미국과 국가보안법,' 조선일보, 1994년 2월 26일자 사설. 여기에서 조선일보는 '고전적 의미의 내정간섭 문제를 거론하지 않더라도 한 나라의 관리가 다른 나라의 국내법에 관해 공개적으로 그 폐지를 운위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다'면서 '국가보안법이 한국인권의 결정적인 커다란 장애요소로 존재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다.

이는 결국 북한인권의 향상을 위해서도 지금 시기 필요한 것은 남북간 평화와 화해와 협력의 증대이며 이를 통해 북한이 경제를 회생시키고 체제를 안정시켜 스스로 변화와 발전의 길로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지금 시기 남북화해의 진작과 상호신뢰의 회복이 과거 냉전적 대결과 상호불신보다 정당한 방향임은 바로 북한인권 개선의 차원에서도 긍정적 의미를 가지는 것이다.

보론 # 탈북자 입국문제와 관련하여

(1) 북한이탈주민의 성격문제: 정치적 망명인가? 비법 월경자인가?

○ 중국 등에 산재되어 있는 다수의 북한이탈주민들이 모두 다 북한체제를 정치적으로 포기하고 등진 망명자인가? 아니면 일시적인 식량난 해소를 위해 경제적 이유로 중국을 떠도는 '경제적 이유의 월경자'인가?

- 1950-60년대 남측에서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돈을 벌기 위해 일본이나 미국으로 건너가 불법체류했던 한국사람들의 경우?

(2)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접근 문제: 인권을 앞세운 명분인가? 북한붕괴를 노린 정치적 행위인가?

○ 식량을 얻으러 월경한 북한주민들을 상대로 북한체제 붕괴를 위해 민간단체들이 기획망명을 실행하는 것의 정당성?

- 예컨대 1960년대 일본이나 미국으로 건너간 남측주민들을 상대로 현지 친북인사들이나 북한사람들이 경제적 시혜를 조건으로(지금 중국내 탈북자들이 남한으로 입국후 받게 되어 있는 정착지원금은 그들에게 일확천금과도 같은 엄청난 액수의 돈임) 북으로의 망명을 종용했을 경우?

65. Denny Roy, 'The Security-Human Rights Nexus in North Korea', The Journal of East Asian Affairs, Vol. XI, No. 1 (Winter/Spring, 1997), pp. 1-19.

66. 동서 대결상황에서 사회주의 진영의 인권향상을 이끌어낸 성공적 사례로 알려진 1975년의 헬싱키 협정의 경우도 인권문제는 사회주의 국가의 인정과 안보충족을 전제로 하고 있었다. 김병로, 북한인권문제와 국제협력, 민족통일연구원 (1997), 38-40쪽.

제목 [한반도인권회의]연합-여야의원 북한인권법안 두고 입장 차

보낸날짜 Thu, 15 Jul 2004 10:23:45 +0900

보낸이 "이주영" <jylee0530@empal.com>

받는이 <sjjepark@pspd.orgom>, <civil@peacekorea.org>, <jinksg@netian.com>, <m321@chol.com>, <jjepark@pspd.org>, <615tongil@jinbo.net>, <jongbup@jungto.org>, <suhbh66@humanrights.go.kr>, <1bn4co@hanmail.net>, <webmaster@kncc.or.kr>, <hhs-615@hanmail.net>, <chongaeyu@hotmail.com>, <chrc@chol.com>, <humanrights@sarangbang.or.kr>, <kspark@hklaw.co.kr>, <law21dg@hanmail.net>, <jinksg@netian.com>, <shlee@hklaw.co.kr>, <reginapy@empal.com>, <jyuk@mail.skhu.ac.kr>, <tuchung@yu.ac.kr>, <intnetwork@jungto.org>, <alterite@jinbo.net>, <truth26@jinbo.net>, <humandasan@hanmail.net>, <cjhoon99@hanmail.net>, <skcho7@mm.ewha.ac.kr>

함께 받는이 <hregang@hanmail.net>, <laegoon@hanmail.net>, <redfrog69@hanmail.net>, <soom03@hanmail.net>, <leesh@iprolink.ch>, <acasia@acasia.info>

안녕하세요. 인권운동사랑방 이주영입니다.

의원들이 미 의회 국제관계위 의원들을 만나 북한인권법안에 대한 이야기도 했네요.
여야 의원들의 방미를 알고 있었다면, 미리 대응을 했을텐데란 생각이 드네요.
돌아 온 다음에라도, 관련 의원들에게 우리 의견서를 보내야겠지요.
오늘 한반도인권회의 회의에서 모니터링 등 역할분담, 운영 등을 체계화하기 위한 논의도 빠뜨리지 말고 해야 겠습니

비가 많이 옵니다. 장마가 지나고 나면, 햇빛이 나겠죠. 무더위를 몰고 오는 햇빛일지라도...
이따 회의에서 뵙겠습니다.

2004/07/14 07:14 송고

韓美의원協 워싱턴서 북핵.인권현안 토론

(워싱턴=연합뉴스) 박노황 특파원= 한.미의원 외교협의회 소속 미국측 의장인 공화당의 에드 로이스(캘리포니아) 하원의원은 13일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미국, 중국, 일본, 소련 등 주변국들이 참여하고 있는 것처럼 북한 난민 지원을 위한 국제적인 공조 체제가 갖춰져야 한다고 말했다.

탈북자 지원을 위해 중국이나 몽골, 베트남 등지에 대규모 정착촌을 건설해야 한다는 안이 민간에서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미 하원의원이 직접 이와 유사한 구상을 밝혀 주목된다.

로이스 의원은 이날 제4차 협의회 모임을 위해 워싱턴을 방문중인 한국측 대표단(단장 유재건 의원)과 만난 뒤 가진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최근 미 하원 국제관계위원회에서 만장 일치로 통과된 북한 인권법안을 거론하며 이같이 밝혔다.

북한 인권법안은 북한 난민들이 북한으로 되돌아 갈 때까지 미국은 안전한 피난처를 제공하며, 중국은 이들이 중국내 유엔고등판무관실 접근을 용이하게 하도록 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이와 관련 유 의원은 "북한 경수로 지원을 위해 한반도 에너지 개발기구(KEDO)를 만들었듯이 북한 난민들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국제 공조 체제를 갖추자는 것"이라며 "그러나 아직까지는 구상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로이스 의원은 이어 "과거 동구권에서도 라디오 선전이 효과를 거둔바 있다" 면서 "선전 방송을 북한 주민들이 직접 듣지 못하더라도 북한 군과 지도층을 변화시킬

북한 인권법안은 '보이스 어브 아메리카'나 '라디오 프리 아시아' 와 같은 라디오 선전 방송의 대북 송출 체제를 강화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이번 모임에는 미국측에서 하비에르 베세라, 마드렌 보달로, 마이크 혼다, 존 코니에스 의원 등이, 한국측에서 김명자, 정봉주, 김문수, 이병석, 박세환, 김효석 의원이 참석, 주한 미군 등 양국 안보 문제, 무역, 북한 인권및 북핵 운제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우리 의원들은 특히 미군 감축및 재배치가 자칫 북한의 오판을 불러 일으키지 않도록 양측 정부의 긴밀한 협조 아래 이뤄져야 한다는 뜻을 전달했다.

그러나 정작 남북 관계 당사자인 한국이 북한 인권법과 같은 것을 제정하지 못한 것과 관련, 일부 의원들은 북핵 회담 등 때문에 북한을 자칫 자극할 만한 조치를 피해야 한하는 한국 정부의 입장을 미국측에 전했다.

nhpark@yna.co.kr (끝)

2004/07/14 08:48 송고

< 워싱턴 정가소식 > 여야의원 北인권법안놓고 입장차

(워싱턴=연합뉴스) 박노황 특파원=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미국이 해주다니 미안합니다."

한나라당의 김문수의원은 13일 워싱턴소재 미 의회 레이번 빌딩에서 열린 한.미 의원 외교협의회 대표단 공동 회견에서 최근 미 하원국제관계위원회가 북한 인권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킨데 대해 감사의 말을 거듭 표명했다.

그는 또 미 상원에 샘 브라운백(공화. 캔자스) 의원이 제안한 '북한 자유법안'이 계류중인 사실을 지적하면서 "한국 국회에서 북한 인권문제에 대해 노력이 부족해 입법안을 못내놓는 등 많은 문제가 있는데 미국이 이처럼 노력한데 대해 깊이 감사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이 에드 조이스(공화. 캘리포니아) 하원의원 등 미국 의원들에게 감사 발언을 하자 이에 열린우리당의 유재건 의원등이 곧바로 반론에 나섰다.

유 의원은 "당연히 한국이 해야 할 일임에도 6자 회담 등 대북 관계를 고려할 때 북한을 자극할 수 없었다"면서 "북한인권법안이 만들어진 배경에는 몇 안되는 탈북자들의 증언이 토대가 됐다"고 지적했다.

또 같은 당의 정봉주, 김명자 의원은 "북한의 인권 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의 인권도 생각해야 한다", "민감한 문제인 만큼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민주당의 김효석 의원은 "북한의 지도부를 겨냥하는 법안"이라며 우려를 나타냈다.

유 의원은 남북관계와 관련, 북한 인권법안이 부담이 될 것으로 생각되지만 결국 미 의회에서 통과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nhpark@yna.co.kr

(끝)

이주영,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서울 종로구 명륜동 2가 8-29 3층 (110-522)
전화 : (02) 741 5363
팩스 : (02) 741 5364
이메일 : jylee0530@empal.com, humanrights@sarangbang.or.kr
홈페이지 : www.sarangbang.or.kr

제목 [한반도인권회의]북한인권법안 미 하원 통과

보낸날짜 Thu, 22 Jul 2004 14:47:37 +0900

보낸이 "이주영" <jylee0530@empal.com>

받는이 <snunited@hanmir.com>, <civil@peacekorea.org>, <jinksg@netian.com>, <m321@chol.com>, <jjepark@pspd.org>, <615tongil@jinbo.net>, <jongbup@jungto.org>, <suhbh66@humanrights.go.kr>, <1bn4co@hanmail.net>, <webmaster@kncc.or.kr>, <hhs-615@hanmail.net>, <chongaeyu@hotmail.com>, <chrc@chol.com>, <humanrights@sarangbang.or.kr>, <kspark@hklaw.co.kr>, <law21dg@hanmail.net>, <jinksg@netian.com>, <shlee@hklaw.co.kr>, <reginapy@empal.com>, <jyuk@mail.skhu.ac.kr>, <tuchung@yu.ac.kr>, <intnetwork@jungto.org>, <alterite@jinbo.net>, <truth26@jinbo.net>, <humandasan@hanmail.net>, <cjhoon99@hanmail.net>, <skcho7@mm.ewha.ac.kr>, <icarpeace@yahoo.co.kr>, <alscii@naver.com>

함께 받는이 <hregang@hanmail.net>, <laegoon@hanmail.net>, <redfrog69@hanmail.net>, <soom03@hanmail.net>, <leesh@iprolink.ch>, <acasia@acasia.info>, <riiacho@chollian.net>, <kimosung@hanmail.net>

인권운동사랑방 이주영입니다. 이미 인터넷 언론이나 저녁 신문을 통해 소식 접하신 분들도 있겠죠. 북한인권법안이 미 하원을 만장일치로 통과했습니다. 이제 상원과의 조정만을 남겨두게 됐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상원이 8월 한달간 휴회에 들어가고 8월말 공화당 전당대회 이후에는 의회의 관심이 모두 대통령 선거에 쏠릴 것을 예상하면 연내 법안 통과가 어려울 수도 있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떤 의견 있으면 회람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북한인권법안 美하원 만장일치 통과

(워싱턴=연합뉴스) 김대영 특파원= 탈북자를 비롯한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대폭 강화하기 위한 `2004 북한인권법안(North Korean Human Rights Act of 2004)'이 21일 만장일치로 미국 하원을 통과했다.

미국의 짐 리치(공화 아이오와주) 하원 국제관계위 아태소위 위원장이 지난 3월 23일 톰 랜터스(민주 캘리포니아주), 크리스토퍼 콕스(공화 캘리포니아) 등 동료 의원 9명과 함께 하원에 상정한 이 법안은 이제 상원과의 조정만을 남겨두게 됐다.

상원에는 지난해 11월 제출된 북한자유법안이 계류중이다.

하원에서 구두표결로 통과된 북한인권법안은 ▲제1장 북한 주민 인권 신장 ▲제2장 궁핍한 북한 주민 지원 ▲제3장 탈북자 보호 등으로 구성돼 있다.

이 법안은 제 1장에서 "북한주민들의 인권이 미국과 북한, 동북아 다른 관련국들 사이의 미래 협상에서 주요 요소로 남아야 한다는 것이 의회의 의견"이라고 전제, "대통령은 북한내 시장경제의 발전과 법치, 민주주의, 인권을 향상시키는 프로그램들을 지원하기 위해 민간 비영리기관들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법안은 또 탈북자들과 관련 "이 법의 제정 120일 이내에 국무장관은 다른 적절한 연방 부처나 기관의 장(長)들과 협의하여 상하원 법사위원회와 적절한 의회 위원회들에 북한 난민들의 상황을 기술하고 탈북자들에 대한 미국 정부의 정책을 설명하는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이 법안은 ▲미국 등 유엔난민고등판무관실(UNHCR) 지원국과 UNHCR은 최고위급에서 지속적으로 중국정부에 중국내 탈북자들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을 UNHCR에 허용한다는 약속을 지키도록 촉구할 것 ▲중국정부가 UNHCR에 탈북자들에 대한 접근을 거부한다면 UNHCR은 규정에 따라 중재자를 임명하고 중재과정을 시작할 것 등을 규

성했나.

이 법안은 특히 "북한주민들은 한국의 헌법에 따라 향유하는 한국민이 될 수 있는 법적인 권리 때문에 미국내에서 난민지위나 망명자격을 얻는 데 방해를 받지 않는다"고 규정했다.

이 법안은 "미국 대통령은 북한정부의 허가 없이 북한 밖으로 나와있는 북한 주민들에 인도주의적으로 지원을 제공하는 기구나 사람들을 지원할 수 있다"면서 북한 밖으로 나온 난민, 망명자, 이주자, 고아들에게 난민캠프 지원, 임시 거처 등을 포함할 수 있는 인도주의적인 지원을 제공하는데 지원금이 사용될 수 있다고 말했다.

kdy@yna.co.kr (끝)

< 美 하원 통과 북한인권법안 주요 내용 >

(워싱턴=연합뉴스) 김대영 특파원 = 미국 하원이 21일 통과시킨 `2004 북한인권법안'은 북한 주민들의 인권보호를 목적으로 북한주민들에 대한 인도주의적 지원과 탈북자들의 인권보호 방안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이 법안의 제정 목적은▲ 북한내 기본적인 인권의 보호와 존중 ▲ 탈북자들의 곤경에 대한 보다 지속적인 인도주의적 해결책 촉진▲ 북한내 인도주의적 지원 제공의 투명성과 접근성, 감시도 향상▲ 북한 안팎으로의 자유로운 정보 흐름 촉진▲ 민주적인 정부체제하에서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 쪽으로 진전 가속화 등이다.

다음은 주요 내용이다.

△ 북한주민 인권신장 = 이 법안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북한주민 인권신장을 위해 대통령이 2005회계연도부터 2008회계연도까지 매년 200만달러를 사용할 수 있다.

미국은 북한을 겨냥한 라디오방송에 대한 지원을 증가시킨다. 미 방송위원회(BBG)는 북한내에서 방해받지 않는 정보의 송출을 용이하게 하고▲ 자유아시아방송(RFA)과▲ 미국의 소리(VOA) 등이 하루 12시간씩 북한에 대한 방송을 한다는 목표 하에 북한에 대한 방송시간을 늘려야 한다.

미국은 또 북한 주민들이 북한 외부에서 들어오는 라디오 방송 등을 통해 정부의 통제를 받지 않는 정보에 더 많이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 긍핍한 북한주민 지원 = 미 대통령은 2005회계연도부터 2008회계연도까지 매년 2천만달러를 북한주민 지원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

비정부기구와 국제기구를 통한 인도주의적 지원과 관련 그런 지원이 정치적, 군사적 사용으로 전용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북한내 가장 취약한 사람들에게 도달할 가능성을 최대화해야 한다. 또 현재 수준 이상의 대북 인도주의적 지원은 투명성, 감시도, 취약한 계층에 대한 접근도 등의 향상을 조건으로 해야 한다. 또 대북 지원을 제공하는 다른 나라들에도 그렇게 하도록 권고해야 한다.

또 미국 정부는 북한 정부기관들에 일반적인(인도주의적이 아닌) 지원을 제공하는 경우 북한이▲ 주민들에게 종교의 자유를 포함한 기본적인 인권을 존중 보호하고▲ 북한주민들과 미국내 자손 및 친척들간의 상당한 재결합을 허용하며▲ 북한 정부가 납치한 일본인 및 한국인들에 대한 모든 정보를 밝히고▲ 납치된 사람들이 가족들과 함께 원래의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허용하고▲ 교도소와 강제노동 수용소를 실질적으로 개혁하고 그 개혁에 대한 국제감시를 허용하는 쪽으로 상당한 진전을 이뤘다는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미국 대통령은 북한 정부의 허가 없이 북한 밖으로 나와있는 북한 주민들에 인도주의적으로 지원을 제공하는 기구나 사람들을 지원할 수 있으며 북한 밖으로 나온 난민, 망명자, 이주자, 고아들에게 난민캠프 지원, 임시 거처 등을 포함할 수 있는 인도주의적인 지원을 제공하는데 지원금이 사용될 수 있다.

△ 북한난민 보호 = 이 법 제정 120일 이내에 국무장관은 다른 연방 기관장들과 협의하에 의회에 탈북자들에 대한 미국정부의 정책을 설명하고 북한 난민들의 상황을 묘사하는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미국 등 유엔난민고등판무관실(UNHCR) 지원국과 UNHCR은 최고위급에서 지속적으로 중국 정부에 중국내 탈북자들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을 UNHCR에 허용한다는 약속을 지키도록 촉구해야 하며, 중국 정부가 UNHCR에 탈북자들에 대한 접근을 거부한다면 UNHCR은 규정에 따라 중재자를 임명하고 중재 과정을 시작해야 한다.

북한 주민들은 한국의 헌법에 따라 향유하는 한국민이 될 수 있는 법적인 권

더 때문에 미국내에서 난민지위나 망명사적을 얻은 데 방해를 받지 않는다.

kdy@yna.co.kr (끝)

< 해설 > 美하원 북한인권법 통과 의미

(워싱턴=연합뉴스) 김대영 특파원 = 미국 하원이 21일 `2004 북한인권법안'을 통과시킨 것은 북한의 인권문제를 더 이상 외면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미국은 그동안 북한의 핵문제 해결에 주력한 나머지 북한의 열악한 인권문제를 소홀히 다뤄왔다는 것이 일각의 비난이었다. 미국은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 등에서 북한 인권문제를 거론하기는 했으나 핵문제 해결에 급급한 나머지 충분한 문제제기를 못했다는 지적을 미국내 종교단체 등 보수층으로부터 받아왔다.

그러나 이 법안이 상하원을 모두 통과하고 입법화될 경우 북한이 반발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되면 기존에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북한 핵문제와 함께 인권문제까지 맞물려 국제사회의 북한문제 해결이 더 복잡해질 수도 있다.

이제 관심사는 상원이 아직 처리하지 않고 있는 `북한자유법안'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여부다. 지난해 11월 상원에 제출된 북한자유법안은 ▲ 북한범죄의 대책반을 만들고 ▲ 미 행정부의 대북 교섭권을 제한하는 등 북한을 자극하는 강경한 내용이 많이 포함돼 있다.

상원은 이에 따라 ▲ 하원의 북한인권법안과 비슷한 내용의 법안을 다시 제출해 통과시키거나 ▲ 북한인권법안과 북한자유법안의 중간 형태의 법안을 다시 상정하거나 ▲ 아니면 이런 종류의 법안과 관련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거나 3가지중 하나를 선택할 것으로 보인다는 게 워싱턴 외교소식통들의 전망이다.

그러나 상원이 8월 한달간 휴회에 들어가고 8월말 공화당 전당대회 이후에는 의회의 관심이 모두 대통령 선거에 쏠릴 것을 예상하면 연내 법안 통과가 어려울 수도 있다.

하원이 이날 통과시킨 법안은 원래 제출됐던 내용을 많이 수정했다.

의원들은 당초 법안에서 ▲ 북한주민들에 대한 인도적인 원조를 1억달러 이상할 수 있다는 조항과 ▲ 탈북자들이 미국에 망명이나 난민지위를 신청할 때 특혜를 준다는 등의 조항을 삭제했다. 그저 탈북자들을 미국이 수용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를 만들었다는 의미가 강한 법안이라는 것이 소식통들의 평가다.

한 외교소식통은 이에 대해 "당초 법안은 탈북자들을 P1, P2 ..등으로 돼 있는 난민신청 우선순위에서 두번째에 해당하는 P2에 올려놓았으나 막상 통과된 법안에는 그런 특혜조항이 삭제됐다"면서 "그저 탈북자들의 난민신청 절차를 신속히 처리한다는 내용만이 있을 뿐"이라고 말했다.

이 법안은 북한에 대한 인도주의적 또는 정부간 원조를 북한내 인권상황과 엄격히 연계시킨 것이 특징이다. 특히 미국의 인도주의적 대북원조가 북한내에서 필요한 사람들에게 분배되는 지 파악할 수 있는 투명성을 크게 강조했다.

정부간 원조는 ▲ 기본적인 인권 존중 ▲ 북한주민들과 미국내 친척간 재결합 ▲ 북한이 납치한 일본인 및 한국인들에 정보 공개 ▲ 납북자들의 귀국 허용 ▲ 교도소와 강제노동수용소 개혁 등과 연계시켰다.

이 법안은 이밖에도 북한주민들이 외부의 정보를 라디오 등을 통해 자유롭게 접할 수 있도록 자금을 지원할 수 있게 만들었다. 북한주민들이 자유롭게 외부정보에 접하는 등 기본적인 인권이 향상된다는 것은 북한정권에 상당한 민주화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것은 "민주적인 정부체제하에서 평화적 한반도 통일쪽으로 진전을 가속화한다"는 입법의 목적과 무관치 않은 것으로 보인다.

kdy@yna.co.kr

(끝)

북한인권법안의 미 하원 통과에 부쳐

우리는 21일 미 하원이 '2004 북한인권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는 소식을 접하였다. 우리 역시 북의 인권상황에 대해 우려하고 인권개선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지만, 북에 대한 압박과 고립을 통해 북 인권을 개선할 수 있다는 이 법안의 기본 인식과 접근법에는 동의할 수 없다. 도리어 이 법안이 북 인권 개선에 기여하기 보다는 한반도 평화를 저해하는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에 대해 우리는 우려한다.

북한인권법안은 제 1장에서 "북한주민들의 인권이 미국과 북한, 동북아 다른 관련국들 사이의 미래 협상에서 주요 요소로 남아야 한다는 것이 의회의 의견"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북핵 6자 회담 등 이미 진행되고 있고, 그 결과가 북한 인권 향상의 환경을 마련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여러 협상들을 난항에 빠뜨릴 수 있다.
또한 북한인권법안은 "대통령은 북한 내 시장경제의 발전과 법치, 민주주의, 인권을 향상시키는 프로그램들을 지원하기 위해 민간 비영리기관들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북의 인권과 민주화는 증진되어야 하지만, 인권을 보편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정치·경제 체제는 북 주민들이 스스로 결정해야 할 몫으로, 외부 행위자가 북의 체제 변화를 꾀하는 것은 주권국가에 대한 내정간섭적 성격을 띨 수 있다.
미국의 대북 라디오 방송을 연장하는 것은 북미 간의 불필요한 분쟁을 낳을 뿐 아니라, 남북한이 상호비방을 금하면서 교류협력을 강화하고 있는 남북 화해 정책에도 위배된다.

북한인권법안은 제2장에서 대북 인도적 지원에 있어 투명성, 감시도, 취약한 계층에 대한 접근도 등의 향상을 조건으로 부과하며, 대북 지원을 제공하는 다른 나라들에도 그렇게 하도록 권고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인도적 원조가 투명한 과정을 통해 가장 취약한 계층에게 지원되어야 함은 당연하지만, 법률을 통해 이러한 조건을 부과하는 것이 북 주민들이 절실히 필요로 하는 인도적 원조의 제공에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또한 북한인권법안은 제3장에서 북 주민들이 한국의 헌법에 따라 향유하는 한국민이 될 수 있는 법적인 권리 때문에 미국 내에서 난민 지위나 망명자격을 얻는데 방해를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며, 미국이 탈북자들을 수용하기 위한 법적인 근거를 만들었다. 그러나 이는 미국이 자신의 동맹국이라고 하는 한국의 헌법과 심각하게 배치된다. 나아가 우리는 탈북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우선 주변국의 합의가 필요하며 근본적으로 탈북 발생을 억지할 수 있기 위해서는 대북 인도적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 인권, 평화, 통일, 시민단체들은 북의 인권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은 어떠한 정치적 목적성도 배제해야 하며, 한반도 평화와 북미 간 협상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당사국과의 대화 및 유엔

등을 통해 신중하고도 평화적인 방법으로 진행되어야 한다고 믿는다. 대북 지원과 북 인권 개선을 연계하는 것은 북 주민의 인권을 보호하겠다는 북한인권법안의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북 주민들의 생존권 보장은 조건 없는 대북 지원을 통한 인도적인 방법으로 진행되어야 하며, 이러한 조치들이 장기적으로 북 주민들의 정치적 자유의 신장을 돕게 될 것이라고 우리는 확신한다. 탈북자 문제의 경우, 탈북 유도는 북 체제 붕괴 의혹을 불러일으킬 수 있으며 탈북자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오히려 탈북 발생의 일차적 원인인 북의 식량 부족과 취약한 경제 인프라의 개선을 위한 인도주의적 지원과 경제협력이 필요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는 북한인권법안이 입법화하는 것에 반대한다.

북한인권법안의 입법화 여부는 앞으로 남은 미 상·하원의 조정 절차에 달려 있는 상황이다. 미 의회는 자국의 동맹국이자 대북정책의 주요 당사국인 한국 정부 및 시민사회의 입장을 충분히 수렴하여야 할 것이다. 우리는 미 의회 내의 조정 과정에서, 이러한 한국 내 시민사회의 입장을 경청해 줄 것을 강력히 희망한다.

2004년 7월 22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인권운동사랑방, 좋은벗들,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 평화네트워크, 평화인권연대, 통일연대

*뒤에 올 4월 미 의회에 보냈던 '북한자유법안과 북한인권법안에 대한 한국 시민사회의 의견'이 첨부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별첨>

2003 북한자유법안과 2004 북한인권법안에 대한 한국 시민사회의 의견

2004년 4월

한국의 시민사회단체는 현재 미국 의회에 상정, 계류되어 있는 2003 북한자유법안과 2004 북한인권법안에 대해 큰 우려를 느낀다. 만일 이러한 법안이 의회를 통과한다면, 향후 대북 협상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법안이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대화에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뿐 아니라, 북의 인권 상황을 개선할 수 있는 기회도 차단할 것이라 우려하고 있다.

1. 몇 가지 논의의 전제

1) 식량권도 중요한 인권이다

현재 북 인권의 가장 주요한 과제 중 하나는 만성적인 식량난과 경제 위기로 인한 기아와 빈곤 문제의 해결이다. 생존권은 다른 인권을 누리기 위한 기본 전제이며, 식량권은 인권 향상을 위한 필수적 요인이다. 생존권에 대한 보장 없이, 인권 신장이란 불가능할 뿐 아니라 지극히 공허하다. 따라서 제반 북 인권의 개선에 우호적인 조건을 창출하기 위해, 국제사회는 인도적 지원을 지속하는 동시에 경제재건을 위한 개발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기아문제가 해결될 때 기타 기본권에 대한 북 주민들의 요구 수준도 높아질 것이며, 이에 상응하는 인권 신장을 위한 공간 형성도 가능할 것이다. 따라서 북 인권 상황을 개선하는데 구체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은 정치적 의도가 내재돼 있는 북한인권법안과 같은 것을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대북 인도적 지원을 위한 예산을 늘리는 일이다.

2) 봉쇄 고립정책보다는 포용정책이 효과적이다.

북한자유법안은 인권 문제를 대량살상무기에 관한 협상이나 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PSI) 등 안보 관련 의제들과 연계함으로써, 인권 문제를 정치화시키고 있다. 이러한 접근은 북을 더욱 고립화시킬 뿐 아니라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킬 것이다. 북이 국제사회의 일원이 될 수 있도록 돕는 포용정책이 북의 인권 개선을 돕는 최선책이다. 국제사회와 함께 하고자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북에 대해 봉쇄 정책을 지속하는 것은 북이 추진하는 개혁 시도를 위축시킬 것이다. 미국은 북이 세계은행이나 아시아개발은행 및 각종 국제원조기구로부터 개발 원조를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북의 지속적인 개혁을 도와야 한다. 또한 미국은 반세기나 지속돼 온 북에 대한 경제제재 조치를 해제하고, 북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제외시켜야 할 것이다.

3) 탈북의 예방과 탈북자에 대한 인도적 지원이 병행돼야 한다.

대다수의 탈북자 문제는 일차적으로 북한의 식량난과 그로 인한 인권 상황의 악화가 기인한 결과이다. 따라서 북의 주민들이 충분한 식량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북을 원조하는 등의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다. 북한자유법안이나 북한인권법안에 규정된 바처럼, 난민촌 건설이나 기획망명 등을 무리하게 시도하는 것은 탈북자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

4) 인권 문제가 북한 체제 붕괴의 목적으로 이용되어선 안 된다.

리처드 루거 미 상원 외교위원장은 북한자유법안이 상정되기 약 4개월 전인 2003년 7월 워싱턴 포스트에 기고한 글을 통해, "우리는 일부 탈북자들이 미국에 재정착하는 것을 허가하고 동맹국들도 그렇게 하도록 압력을 가해야 한다"며 "… (이런 조치는) 1989년 동독의 대규모 탈출사태가 동독을 무너뜨린 것처럼 평양 정권의 붕괴를 재촉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밝힌 바 있다. 이러한 언급은, 북한자유법안과 북한인권법안이 북 인권의 개선이 아니라 북 체제의 붕괴를 의도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불러일으킨다.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인권 문제를 이용해서는 안 된다. 북 인권 문제는 인권 자체의 옹호와 증진 차원에서 다루어져야 하며, 실질적으로 인권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모색돼야 한다.
다시 한번 강조하건대, 북한자유법안이든 북한인권법안이든 그 어떤 다른 법안이든 북 '체제붕괴'를 의도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한, 한반도에는 불필요한 긴장이 조성될 것이 자명하다. 한반도 긴장과 전쟁가능성은 북 내에서의 인권 신장의 여지를 제약할 것이다. 따라서 한반도 및 주변 지역의 평화 확보를 통한 대외적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급선무이다.

5) 북한자유법안과 북한인권법안은 한미관계에도 우려스러운 영향을 미칠 것이다.

북한자유법안과 북한인권법안이 미 의회에서 통과된다면, 그것은 한국의 시민사회에 커다란 당혹감을 줄 것이다. 우리는 남북 상호 교류를 통한 양측에 대한 이해 증진이 궁극적으로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보를 이끌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오랫동안 남북 관계의 개선을 위해 노력해 왔다. 법안의 상정 자체가 이미 상당한 우려와 의구심을 자아낸 것이 사실이다. 한국 사회의 대다수는 미국의 대한반도 정책이 남북한 양측과의 대화와 이해에 기초하여 점진적이고 건설적인 변화를 이끌어내도록, 일방주의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추진되기를 원하고 있다. 미 의회가 자신의 동맹국인 한국 내의 다양한 의견을 존중하지 않고 북한자유법안과 북한인권법안과 같은 법안들을 상정한 것은 대단한 유감이다.

2. 우리의 제안

우리는 북 인권의 개선 및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대북 정책이 다음과 같은 원칙에 의해 추진되어야 한다고 권고한다. 나아가, 한국의 시민사회단체도 한반도의 평화와 북의 인권 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이며, 미국 및 국제사회의 양심세력들과의 연대를 통해 동북아 안정과 평화를 구축하는데 힘쓸 것이다.

첫째, 북의 인권 개선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은 어떠한 정치적 목적성도 배제해야 한다. 또한 한반도 평화와 북미 간 협상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평화적인 방법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둘째, 북 주민들의 생존권 보장은 조건 없는 대북 지원을 통한 인도적인 방법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이러한 조치들은 장기적으로 북 주민들의 정치적 자유의 신장을 돕게 될 것이다.

셋째, 북의 인권 개선, 민주주의의 향상, 그리고 한반도의 평화는 북과 관련국들이 상호 체제를 인정, 존중하는 가운데 진작될 수 있다. 우리는 남북한이 1991년 채택한 남북기본합의서의 정신에 따라 교류와 협력을 적극 추진할 때 한반도에 평화가 정착될 것으로 믿는다. 따라서 미국의 정책은 상호 체제인정과 국제협력, 특히 남북 협력에 장애가 되지 않아야 한다.

넷째, 우리는 이상과 같은 관점에서 비추어 볼 때 북한자유법안과 북한인권법안에 대하여 깊은 우려를 느낀다. 미 의회가 이러한 우리의 입장을 경청해주기를 희망한다.

<별첨 1> 2003 북한자유법안의 구체적 조항에 대한 우리의 견해

○ *Sec. 3*은 이 법안의 전제가 되는 조항인데, 북에 대한 왜곡되고 편향된 인식을 포함하고 있어 우려된다. 먼저 *Sec. 3*의 북의 실태에 대한 설명의 상당 부분은 좀더 확인이 필요한 사항이다. 또한 현재의 북의 열악한 상황을 평가할 때는 그러한 상황에 영향을 미친 내적인 요인과 더불어 외적인 요인을 동시에 살펴야 한다.

○ *Sec. 4*의 법안 목적에 대해

• 이 법안의 진정한 의도는 무엇인가? 이 법안은 다음의 세 가지 목적을 명시하고 있다. 1) 한반도의 대량살상무기 문제 해소, 2) 민주정부 하의 한반도 통일지원과, 3) 북한주민의 인권 향상.

• 법안의 세 가지 목적은 서로 범주를 달리하는 문제로서 이러한 것들을 연계시킨다면 법안의 정치적 목적에 대해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북 주민의 인권향상은 법안에 명시된 앞의 두 정치

적인 목적과 접목시키지 말 것을 요구한다. 또한 대량살상무기의 유일한 해법이 북한의 자유화와 민주화라고 여기는 것 또한 위험한 발상이다. 어떠한 대북정책도 1970년에 유엔총회 결의로 채택된 (2625-XXV) "유엔 헌장에 따른 국가 간의 우호관계 및 협력에 관한 국제법의 제 원칙 선언"에서 널리 합의된 '분쟁의 평화적 해결원칙, 불간섭의 원칙, 국제협력의 원칙, 국가의 주권평등의 원칙'을 준수해야 할 것이다.

○ 1장 북한 주민의 인권 보호

우리는 북 주민의 인권 보호가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한 국제기구의 조사와 이에 대한 북의 협력을 통해 해결될 수 있다고 믿는다.

그러나 *Sec. 101*은 국무장관이 CIA 및 여타 정보기구들과 협조해 북의 감옥과 수용소 및 탈북자에 관한 비밀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있다. 정보활동 차원에서 인권문제에 접근하는 것은 공정성과 도덕성의 문제를 제기할 뿐 아니라 실질적인 인권 개선의 효과도 거두기 어렵다.

○ 2장 북 난민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

탈북자가 계속 발생하는 가장 큰 원인은 북의 열악한 경제 상황과 식량난으로서, 탈북자의 인도적 처우를 보장하고 탈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경제를 재건하고 식량난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필수적이다.

그런데 2장은 난민 수용소의 설치 및 탈북자들의 입국 관리의 국토안보부로의 이관, 탈북 지원 등을 주된 조치로 하고 있다. 이는 탈북을 더욱 양산할 것이며, 탈북자들의 인권 개선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특히 *Sec. 207*은 국토안보부 주관 하에 대량살상 무기 정보를 제공하는 탈북자들에게 미국 비자를 발급하도록 하고 있는데, 국토안보부가 비자 업무를 담당한다는 점에서나 탈북자들을 인권 보호의 관점이 아닌 정보 가치에 따라 선별적으로 처우한다는 점에서나 모두 문제가 있다.

또한 *Sec. 211(House Bill/Sec. 210 of Senate Bill)*에서 명시하듯, 이 법안은 북한 주민의 북한 탈출을 지원하는 개인, 단체 및 정부기구를 지원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인위적으로 북한 주민의 탈출을 유도하고 북한 내부의 불안을 의도하는 행위로 인식될 수 있다. 따라서 이는 난민 보호를 위한 인도주의적 원칙에 위배된다.

○ 3장 북한 민주화 향상 조치

• 자유법안은 앞에 서술된 법안의 목적 중 하나로 민주정부 하에서의 한반도 통일 지원을 언급하고, 3장에서 구체적으로 이에 관한 조치를 규정하고 있다. 인권은 불가침의 주권적 영역이 아니라 하더라도, 타국의 체제 자체를 문제시하고 그에 대한 간섭을 꾀하는 것은 국제법적으로 허용되기 어렵다. 기본적으로 북한 민주화의 주체는 북한 주민이며, 그 과정은 평화적이어야 한다.

• *Sec. 301*과 *Sec. 302*는 대북 라디오 방송을 하루 24시간으로 연장하고, 북 주민에게 라디오를 보급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조치는 물리적 충돌을 유발하는 등 불필요한 분쟁의 소지를 안고 있다.

• *Sec. 303*은 동북아 국가들이 미국 정부의 재정 지원을 받기 위한 조건으로 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PSI) 등에 참여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PSI와 관련해선 국제법적 논란이 있을 뿐 아니라, 북한은 이미 이를 자신에 대한 부당한 군사적 봉쇄 행위로 간주하고 있다.

• *Sec. 305*는 북한의 시장 경제화를 장려하는 단체와 개인에게 재정을 지원하는 내용인데, 이러한 접근은 북한의 민주화를 실질적으로 진작시킬 수 없다.

이러한 내용을 종합해 볼 때, 3장의 각 조항들은 물질 공세를 통해 북 체제 붕괴를 선동하고 있어 남북의 화해와 교류 협력에 역행한다.

○ 4장 북한과의 교섭

• *Sec. 401*은 미국과 북 사이의 모든 협상에 북 인권 문제를 의제로 추가하도록 하고 있는데, 북 인권 문제를 정치, 군사적 문제와 연계시키면 인권 개선도 이룰 수 없을 뿐 아니라 현재 진행 중인 6자 회담에도 걸림돌이 된다. 각각의 문제들은 별도의 틀을 통해 평화적인 해법을 찾아야 한다.

• *Sec. 402*는 북에 대한 경제 제재 해제 및 경제 원조를 시장 중심의 근본적인 경제의 변화, 또는 마약이나 위조지폐 거래와 같은 국제적 범죄 행위에 가담한 북한인의 처벌 등과 연계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으로 북에 대한 제재의 근거를 추가하고 북한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것은 북한의 경제재건이나 인권개선에 전혀 도움을 줄 수 없다. 북한의 경제 재건을 돕고, 북한이 국제적 경제 규범을 준수하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미국은 북에 대한 경제 제재를 해제해야 한다.

• *Sec. 403*은 북 인권 개선과 경제 재건에 필요한 인도적, 비인도적 지원을 차단하는 것이다. 먼저, 인도적 지원이 북에 의해 정치적 도구로 사용되지 않고 필요한 사람이 수혜를 받는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했다는 것이 입증되지 않으면, 인도적 지원을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세계식량계획(WFP)이나 유니세프(UNICEF)의 최근 보고들은 북한의 식량 분배의 투명성이 개선되고 있으며 지금까지의 인도적 지원이 북의 식량 상황의 개선을 이끌어냈다고 평가하는 동시에[1], 여전한 식량 부족 상태의 해소를 위해 국제사회의 인도적 지원을 호소하고 있다. 우리는 이러한 보고와 인식을 같이 하고 인도적 지원은 무조건적이어야 한다는 점을 재확인하며, 북한 주민들의 식량권을 보호하고 증진시키기 위해 인도적 지원이 보다 확대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법안은 또 비인도적 지원의 전제 조건으로 과도한 것들을 북에 요구하고 있다. 비인도적 지원에 대해 여러 전제조건을 내거는 것은 현재 진행 중인 북핵 협상을 더욱 어렵게 할 것이다. 무엇보다 이러한 접근은 남북경협을 통해 비인도적 지원을 확대하고 이를 통해 남북화해협력을 추진하고 있는 한국 정부의 대북정책과 상충된다는 점에서 우려된다. 이산가족의 재결합 문제 및 일본인 납치자 문제는 해당 당사국들이 해결해 나가야 하는 문제이다.

---

1 FAO/WFP Crop and Food Supply Assessment Mission to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 30 October 2003.

"Bellamy sees improvements for children in DPRK", 17 March, 2004, UNICEF

전반적으로 현재 미 의회에 상정된 북한자유법안은 법안 스스로가 목적한 북한의 인권 개선에 대한 실질적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반면, 북미 간 긴장을 고조시킬 뿐이다. 아직 정전상태인 한반도에서 그 한 당사국이 상대국의 인권 문제를 제기해 정권교체와 체제의 전복을 도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것은 인권을 인권 자체의 옹호와 증진이 아니라 정치적 목적의 수단으로 이용하려는 것으로 인권의 근본정신에 부합하지 않는다. 우리는 인권의 보편성을 인정하면서, 한 나라의 인권의 개선은 정치적 전략을 배제한 상황에서 당사국과 국제사회의 동의와 협력의 과정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믿는다.

<별첨 2> 2004 북한인권법안의 구체적 조항에 대한 우리의 견해

Sec. 3 조사 결과

현재 북한 인권상황에 대한 정보는 매우 취약하며 취합된 정보도 상세한 검증이 요구된다. 청문회 증언, 국무성 보고서, 정보기관의 보고서라 할지라도 그 인용과 원 자료에 대한 충분한 검증이 필요하다. 예컨대 생체실험 등은 아직 명확히 확인된 바 없다. 북한인권상황에 대하여 보다 다양한 자료로부터 정보를 수집할 필요가 있으며 당사국인 한국 정부와의 긴밀한 협조와 정보검증은 필수 불가결하다.

Sec. 4. 법안 목적

우리는 법안의 목적으로 (2)항과 (3)항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것이, 그것이 대북 인도적 지원을 위해 촉진되어야 할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북한에 대한 시급하고, 신속한 인도주의적 지원을 주변화할 여지를 만들고 있어 오히려 인권 보호의 일반적 목적에 위배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하고 있다. (4)항 역시 북한에 대한 매우 광범위한 주권침해 행위를 야기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5)항은 '민주정부 하의 통일'이라고 규정하고 있어 인권법안의 목적으로 적절치 않다. 또한 이러한 표현은 하나의 민주정부로 해석되므로, 이는 북한 당국과 한반도의 주민들로 하여금 이 법안이 한국 정부 하의 흡수 통일을 목표로 하는 것으로 인식하게 하여 유익하지 않은 반작용과 반발을 야기할 매우 위험한 조항이다.

미국 정부와 의회는 현재 남북이 상호 체제를 인정하는 가운데 남북한의 합의에 의한 평화적 통일을 지향하고 있으며 이는 절대 다수 한반도 주민들의 평화지향 열망과 합치하는 것임을 주목해야 한다. 따라서 동 법안은 남북의 화해협력의 흐름에 정면으로 역행하는 것으로 인식될 것이며 북미 간 협상의 진전에도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다.

1장. 북한 주민의 인권 향상

Sec. 101. 북 인권 문제를 동북아 국가의 대북 협상의 주요 관심사로 포함시키는 것은 곧 다른 정치, 군사적, 경제적 협상 과제들과 연계시키도록 해당국에 요구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주요 관심사는 전제로 이해된다. 그러나 이는 이미 진행되고 있고, 그 결과가 북한 인권향상의 환경을 마련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여러 협상들을 난항에 빠트릴 수 있다.

Sec. 102. 북의 인권과 민주화는 증진되어야 하지만 외부 행위자가 Sec. 102에서 언급한 특정한 수단을 동원하여 북한의 체제변화를 꾀하는 것은 주권국가에 대한 내정간섭으로 해석될 것이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를 야기할 것이다.

Sec. 103. 미국의 대북라디오 방송은 북미간의 불필요한 분쟁을 낳을 수 있다 또한 남북한이 상호비방을 금하면서 교류협력을 강화하고 있는 남북화해정책에 위배되는 것이다.

Sec. 105. 유엔을 통한 인권 개선은 실질적인 협력과 상호신뢰 증진을 통해 점진적인 개선과 개방을 유도할 수 있을 때 바람직하다. 우리는 이 같은 유엔 인권위원회의 훌륭한 인권 개선 방법인 전문협력과 자문 제도를 활용하기도 전에 정치적 압박으로 비약한 것에 깊은 우려를 표시한다. 더군다나 북한인권법안은 이러한 바람직한 제도에 대한 언급을 완전히 생략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북한을 표적화하는 대립적 접근만을 편향되게 강조하고 있다. 유엔 인권위의 역사는 이러한 대립적 표적화 접근이 인권 개선에 기여하기보다는 특정 국가들 간의 정치적 비난만 야기했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으며 동 법안은 그러한 잘못을 반복하고자 한다. 아울러 미국이 유엔에 북한 인권문제를 제기하기 위해서는 유엔 회원국으로서 북한의 권리와 의무를 인정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

2장. 궁핍 상태에 처한 북한 주민의 지원

Sec. 202. 북한 내로 제공되는 지원
(a)(b) 투명성, 모니터링 및 접근을 충분히 향상시킨다는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는 것 때문에, 북한에 제공되는 인도적 지원이 줄거나, 지원의 시기가 지연되어서는 안 된다.
(c) 비인도적 지원에 대해 여러 전제조건을 내거는 것은 현재 진행 중인 북핵 협상을 더욱 어렵게 할 것이다. 무엇보다 이러한 접근은 남북경협을 통해 비인도적 지원을 확대하고 이를 통해 남북화해협력을 추진하고 있는 한국 정부의 대북정책과 상충된다는 점에서 우려된다.

3장 북한 난민의 보호

Sec. 302. 북 주민이 미국에 난민지위 또는 망명을 신청할 경우 동 조항은 북한 주민을 한국 국민으로 간주하는 현재의 한국 헌법과 심각한 비일관성을 명시적으로 노정하게 됨으로써 커다란 논란거리가 될 수 있다. 우리는 북한 난민을 보호하기 위해 우선 주변국의 합의가 필요하며 무엇보다도 시급한 것은 난민 발생을 억지할 수 있도록 대북 인도적 지원을 확대하는 것이라고 믿는다.

Sec. 306. ~ Sec. 307. 탈북자를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정보 가치에 따라 판단하고 북에 대한 정보활동에 활용하는 것은 탈북자의 인권 보호와는 전혀 무관한 것이다. 우리는 미국이 탈북자 문제를 인권보호 차원이 아닌 정략적인 이해에 따라 접근하고 있다는 점에 우려를 표한다.

한국 시민사회는 북한자유법안과 더불어 최근 미 하원에 상정, 계류 중인 북한인권법안에도 주목하고 있다. 북한인권법안은 대량살상무기 문제의 해결이라는 상이한 범주의 문제를 법안의 목적에서 제외했고, 대북 지원의 전제조건에 있어 대통령의 재량권을 인정하는 일정한 융통성을 보이는 등 북한자유법안과는 차이가 없지는 않다. 그러나 동 법안이 전체적으로 북한에 대한 압박과 고립을 의도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변화가 없다. 따라서 비록 한국 시민사회가 북한 인권상황에 대해 우려하고 인권개선의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지만, 북한에 대한 압박과 고립을 통해 북한인권을 개선할 수 있다는 이 법안의 기보인식과 접근법에는 동의할 수 없다. 도리어 이 법안이 북한인권 개선에 기여하기보다는 한반도 평화를 저해하는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에 대해 우려한다. <끝>

제목	[한반도인권회의]북한인권법안 수정내용, 회의록, 관련 기사 등
보낸날짜	Fri, 23 Jul 2004 02:03:29 +0900
보낸이	"이주영" <jylee0530@empal.com>
받는이	<snunited@hanmir.com>, <civil@peacekorea.org>, <jinksg@netian.com>, <m321@chol.com>, <jjepark@pspd.org>, <615tongil@jinbo.net>, <jongbup@jungto.org>, <suhbh66@humanrights.go.kr>, <1bn4co@hanmail.net>, <webmaster@kncc.or.kr>, <hhs-615@hanmail.net>, <chongaeyu@hotmail.com>, <chrc@chol.com>, <humanrights@sarangbang.or.kr>, <kspark@hklaw.co.kr>, <law21dg@hanmail.net>, <jinksg@netian.com>, <shlee@hklaw.co.kr>, <reginapy@empal.com>, <jyuk@mail.skhu.ac.kr>, <tuchung@yu.ac.kr>, <intnetwork@jungto.org>, <alterite@jinbo.net>, <truth26@jinbo.net>, <humandasan@hanmail.net>, <cjhoon99@hanmail.net>, <skcho7@mm.ewha.ac.kr>, <icarpeace@yahoo.co.kr>, <alscii@naver.com>
함께 받는이	<hregang@hanmail.net>, <laegoon@hanmail.net>, <redfrog69@hanmail.net>, <soom03@hanmail.net>, <leesh@iprolink.ch>, <acasia@acasia.info>, <riiacho@chollian.net>, <kimosung@hanmail.net>

7월 21일 미 하원의 북한인권법안 심의 회의록을 찾았습니다. 아래 주소를 클릭하시면, 회의록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파일로도 첨부합니다. 영문 문서임을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http://thomas.loc.gov/cgi -bin/query/D?r108:63:./temp/~r1080hx3fM ::

심의 과정에서 수정된 법안 내용도 파일로 첨부합니다. FCNL의 Karin Lee가 보내주었습니다.

아래에는 언론의 북한인권법안 관련 최신 기사들을 보내드립니다. 북한인권법안의 미 의회 통과를 막기 위해 한국의 국회의원들 내지 정부 부처를 접촉할 필요가 있는지 판단해주시면 좋겠고, 필요하다면 적절한 단체에서 맡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연합뉴스>

與 소장파 `북한인권법 저지안' 추진

(서울=연합뉴스) 고일환기자 =386세대를 주축으로 한 열린우리당 소장파는 22일 미국 하원의 북한인권법안을 처리와 관련, 다음 단계인 상원 처리를 저지하기 위한 국회 결의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우리당 소장파가 지난달 이라크 전쟁과 한반도 문제에 대한 미정부 입장을 비판하는 내용의 대미성명을 발표한데 이어, 미 하원의 북한인권법 처리를 비난하는 내용의 결의안까지 제출할 경우 적잖은 외교적 파장이 예상된다.

정봉주(鄭鳳株) 의원은 이날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북한 내부사정을 지나치게 간섭하는 북한인권법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을 무산시킬 위험성까지도 포함하고 있다"며 "상원 통과 절차가 남아있는 이 법안의 저지를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을 분명히 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미 하원이 만장일치로 처리한 북한인권법안은 북한 주민 인권 신장과 북한 주민 지원, 탈북자 보호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결의안 작성에 앞서 정 의원은 민주당 김효석(金孝錫) 의원과 함께 북한인권법 저지를 주장하는 내용의 성명서를 냈다.

그는 성명서에서 "미국 하원이 한반도 평화 정착과 긴장 완화라는 우리 민족의 요구를 적절하게 반영하고 있는지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며 "미 하원의 법안

성과 반성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김효석 의원은 "인권문제를 먼저 제기하는 것은 남북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며 "미국이 대선을 앞두고 갑자기 이 법안을 처리한 이유는 북핵문제에 대한 국내 비난여론을 덜기 위해서인 것 같다"고 지적했다.

koman@yna.co.kr (끝)

2004/07/22 17:45 송고

< 정부, 美하원 북한인권법안 통과에 곤혹 >

(서울=연합뉴스) 문관현 기자 = 미국 의회 하원이 21일(현지시간) 북한 주민들의 인권 보호를 목적으로 한 '2004 북한인권법안'을 통과시키자 정부 당국이 곤혹스러워하는 분위기다.

정부가 난처해하는 이유는 법안의 '북한난민보호' 조항 중 "북한 주민들은 한국의 헌법에 따라 향유하는 한국민이 될 수 있는 법적인 권리 때문에 미국내에서 난민 지위나 망명 자격을 얻는 데 방해를 받지 않는다"는 부분 때문이다.

그동안 북한 주민 또는 탈북자들은 법적으로는 남한 주민과 똑같은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에 미국으로부터 난민 지위나 망명 자격을 취득하는 것 자체가 한국 정부에게는 대단히 부담스러운 사안이 될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탈북자에게 난민 지위 부여를 골자로 한 북한인권법안이 지난 3월 하원에 상정된 이후 정부 당국은 외교 채널을 통해 미국측에 '불편한' 정부 입장을 다각도로 전달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21일 "미 하원에 법안이 제출되자 초기에 정부는 강한 (반대) 입장을 보였다"면서 "이로 인해 여러 가지 제도적 장치들이 삭제되거나 수정되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아직 (하원을 통과했을 뿐) 상원 통과와 대통령의 재가 등 입법화를 위한 절차가 남아 있다"며 앞으로 더 지켜보겠다는 자세를 보였으나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못했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북한인권법안을 살펴본 결과 구체적인 조항이 많이 순화된 느낌"이라고 전제한 뒤 "하지만 입법 취지에서 미국과 한국 정부의 대북정책의 차이점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고 곤혹스러워 했다.

그는 정부의 대응책을 묻는 질문에 "정부가 문제를 제기하면 자칫 내정 간섭으로 비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하지만 남북한이 동시에 유엔에 가입한 상태에서 남북은 별개의 독립국가이므로 미국이 탈북자에게 난민지위를 부여하고 망명을 허용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현실적인 시각도 만만치 않다.

익명을 요구한 법학자는 "북한인권법안은 한국 헌법을 존중하되, 그 대신 갈 곳 없고 돌아갈 수 없는 탈북자들이 미국으로 망명을 신청할 경우 받아들이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탈북지원단체의 회원은 "법안 통과로 인해 미국은 물론 한국의 비정부기구(NGO)들의 탈북지원 활동이 본격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탈북자 문제에 대해 미국 정부보다 소극적인 자세를 보여온 한국 정부로서 상당히 부담스런 상황이 벌어졌다"고 주장했다. khmoon@yna.co.kr (끝)

<오마이뉴스>

"북한 정권교체와 붕괴 위한 1단계 시작"
'북한인권법' 미 하원서 만장일치 통과.. 한반도에 미칠 영향은?

기사전송 기사프린트 장윤선(sunnijang) 기자 쪽지보내기

'이라크 해방법' '이란 민주화법' '쿠바 자유연대법'.

미국 의회는 '불량국가'로 지목한 나라들에 대해 미국 국내법으로 해당국가에 대한 정책을 조율할 수 있는 법안을 통과시켜왔다. 이후 미국이 정한 '불량국가'들은 그에 대한 상응한 '응징'을 받아왔다.

이번에 미 하원이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2004 북한인권법안(이하 북한인권법안)'도 그와 유사한 맥락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한반도 평화에 미칠 영향과 파장에 대해 시민사회가 우려를 표명하고 나섰다.

북한인권법안의 제정 목적은 "첫째, 북한내 기본적인 인권의 보호와 존중, 둘째 탈북자들의 곤경에 대한 보다 지속적인 인도주의적 해결책 촉진, 셋째 북한내 인도주의적 지원 및 제공의 투명성과 접근성, 감시도 향상, 넷째 북한 안팎으로의 자유로운 정보 흐름 촉진, 다섯째 민주적인 정부체제하에서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 쪽으로 진전 가속화 등"이다.

이 법안의 주요 내용에 따르면, "▲북한주민 인권신장을 위해 미 정부는 대통령이 2005년 회계연도부터 2008년 회계연도까지 매년 200만달러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으며 ▲대북 인도주의적 지원은 투명성, 감시도, 취약한 계층에 대한 접근도 등의 향상을 조건으로 하고 미국 이외 대북 지원을 제공하는 다른 나라들도 그렇게 하도록 권고해야 하며 ▲탈북자들이 한국 헌법에 따라 한국민이 될 수 있는 법적 권리 때문에 미국 내에서 난민지위나 망명자격을 얻는 데 방해를 받지 않는다"고 규정했다.

"북한에 대한 압박과 고립으로 북 인권 개선 못한다"

이러한 법안에 대해 인권운동사랑방 등 10개 사회단체들은 22일 '북한인권법안의 미 하원 통과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다.

이들은 "21일 미 하원이 '2004 북한인권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는 소식을 접했다"며 "우리 역시 북의 인권상황에 대해 우려하고 인권개선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지만, 북에 대한 압박과 고립을 통해 북 인권을 개선할 수 있다는 이 법안의 기본 인식과 접근법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들은 "미 하원이 통과시킨 이 법안은 북한의 인권 개선에 기여하기보다는 한반도 평화를 저해하는 부정적 영향을 끼칠 것"이라며 "이 점을 매우 우려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북한인권법안은 제1장에서 '북한주민들의 인권이 미국과 북한, 동북아 다른 관련 국들 사이의 미래 협상에서 주요 요소로 남아야 한다'고 밝혔는데 이 점은 이미 진행 중인 북핵 6자회담 등의 결과가 북한 인권 향상의 환경을 마련하고 도움을 주는 여러 협상을 난항에 빠트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이들은 "북한인권법안은 '미 대통령은 북한 내 시장경제의 발전과 법치, 민주주의, 인권을 향상시키는 프로그램들을 지원하기 위해 민간 비영리기관들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북의 인권과 민주화는 증진되어야 하지만, 인권을 보편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정치·경제 체제는 북 주민들이 스스로 결정해야 할 몫이고 외부 행위자가 북의 체제 변화를 꾀하는 것은 주권국가에 대한 내정간섭적 성격을 띨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미국의 대북 라디오방송을 연장하는 것은 북미간의 불필요한 분쟁을 낳을 뿐 아니라, 남북한이 상호비방을 금하면서 교류협력을 강화하고 있는 남북 화해정책에도 위배된다"고 밝혔다.

인권단체들, 북한인권법 입법화 반대 표명

한편 이들은 "북한인권법안 제2장이 정한 대북 인도적 지원의 투명성·감시도·취약한 계층에 대한 접근도 등의 향상을 조건으로 제시하고, 대북 지원을 제공하는 다른 나라들에도 그렇게 하도록 권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인도적 원조가 투명한 과정을 통해 가장 취약한 계층에게 지원되어야 함은 당연하지만, 법률을 통해 이 조건을 부과하는 것이 인도적 원조의 제공에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북한인권법안은 제3장에서 북 주민들이 한국의 헌법에 따라 향유하는 한국민이 될 수 있는 법적인 권리 때문에 미국 내에서 난민 지위나 망명자격을 얻는데 방해를 받지 않는다고 규정해 미국이 탈북자들을 수용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만들었다"며 "그러나 이는 미국이 자신의 동맹국이라고 하는 한국의 헌법과 심각하게 배치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탈북자 보호를 위해서는 우선 주변국의 합의가 필요하다"며 "근본적으로 탈북 발생을 억지할 수 있기 위해서는 대북 인도적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북의 인권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은 어떠한 정치적 목적성도 배제해야 한다"며 "한반도 평화와 북미 간 협상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당사국과의 대화 및 유엔 등을 통해 신중하고도 평화적인 방법으로 진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탈북을 유도하는 것은 북 체제 붕괴 의혹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며 "탈북자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오히려 탈북 발생의 일차적 원인인 북의 식량 부족과 취약한 경제 인프라의 개선을 위한 인도주의적 지원과 경제협력이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들은 "이 점에서 북한인권법안의 입법화에 반대한다"며 "미 의회는 자국의 동맹국이자 대북정책의 주요 당사국인 한국정부 및 시민사회의 입장을 충분히 수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근식 교수, "외교압력 군사봉쇄 시작될 수 있다"

김근식 경남대 북한대학원 교수는 "미국은 적대국가에 대해 특별법을 만들어 자국의 정책을 입법화 해왔다"며 "이 법은 미국의 정권교체와 관계없이 힘을 갖는 것이기 때문에 매우 무서운 법"이라고 논평했다.

김 교수는 "이 법안은 부시 미 대통령이 대북강경정책을 펴는 상황에서 북한의 민주화와 정권교체를 염두에 두고 만든 것"이라며 "최근 남북간 화해협력을 지향하는 한반도 입장에서는 매우 위험스러운 법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미 상원에 제출됐던 북한자유법안에 비하면 훨씬 완화된 편이기는 하나 북한이라는 특정국가에 대한 정권교체를 요구하는 1단계가 시작됐다는 면에서 매우 심각하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이 법안은 대북 정권교체와 붕괴를 위한 입법화의 첫 번째 시도"라며 "국내 이 법안의 문제점이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지만 이 법안이 발전하게 되면 향후 외교압력이나 군사봉쇄 등이 시작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시사점이 있다"고 밝혔다.

* *

조선일보에서 뭐라고 하는지도 우리가 알아야 겠죠?

<조선일보>

美, 北인권 개입 근거 마련 "정권붕괴 목적 아니다" 강조
美하원 '北인권법안' 통과

상원 심의거쳐 확정

워싱턴=허용범 특파원 heo@chosun.com

입력 : 2004.07.22 19:31 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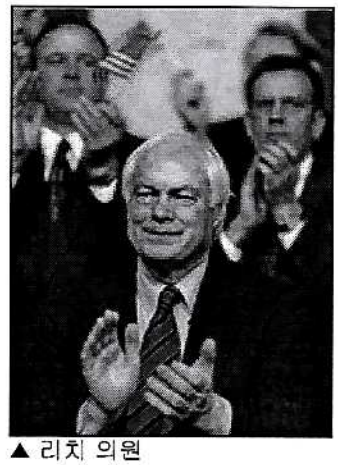
▲ 리치 의원

짐 리치 미 하원 국제관계위 아태소위원장이 지난 3월 23일 제출한 '북한인권법안'은 21일 반대자 없이 13분여 만에 구두표결로 가결됐다.

이 법안은 북한 인권문제에 대한 미국 의회의 첫 입법적 조치라는 데 큰 의미가 있다. 북한 인권문제에 대해 미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법적 근거와 권한을 부여한 것이다.

법안이 통과되자 워싱턴에 있는 북한인권 단체들은 일제히 환호했다. 북한인권 운동의 전면에 서 온 디펜스포럼의 수잰 숄티 이사장은 "오늘은 북한 사람들에게 위대한 날이자, 미국 의회가 진정으로 '국민의 의회'임을 보여준 날"이라고 말했다. 탈북자인권보호단체인 AEGIS 재단 남재중 이사장은 "북한인권의 절박한 상황에 비춰보면 미흡하지만 미국이 이를 입법적 조치로 접근하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역사적 첫걸음으로 평가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법안이 법률로 확정되기 위해서는 앞으로 상원의 심의·통과절차를 거쳐야 한다. 하원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된 사실이나, 논란을 빚었던 탈북자들의 법적 신분보장 등에 대해 그간 대폭적 수정이 이뤄진 점 등으로 미뤄 연내 통과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도 적지 않다.

법안 제출자인 짐 리치 의원은 법안 통과 직후 성명서를 발표, "북한인권법은 인권과 탈북자 보호, 인도적 지원의 투명성에서 진전을 이루자는 진정한 뜻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북한정권 붕괴와 같은 숨은 전략을 가리려는 술책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법안에 대한 북한의 반발 가능성과 한국 내외의 반대파들의 주장을 의식한 것이다.

법안은 3개 장(章)에 18개 조문으로 이뤄져 있으며, A4용지로 인쇄했을 경우 26쪽에 이르는 분량이다. 한 조문이 때론 2~3페이지에 걸쳐 있을 만큼 각 조항의 목적, 지원의 종류와 방법, 필요예산, 의회에 대한 보고내용 등을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

법안은 북한 내 정치범 수용소와 기아, 탈북자에 대한 탄압 등 북한 인권상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25개 항목으로 열거하고 있으며, ▲북한 인권개선에 200만달러 ▲북한 자유촉진 활동에 200만달러 ▲탈북난민 등의 지원에 2000만달러 등 연간 최대 2400만달러(약 270억원)를 내년부터 정부가 지출할 수 있도록 승인하는 규정도 포함시켰다.

이 처한 상황 등을 법 시행 후 120일 내에 의회에 보고토록 하는 등 정부의 보고의무를 각 조항마다 명시했다.

여러 곳에서 한국의 대북지원을 염두에 둔 것 같은 조항들도 눈에 띈다. 특히 북한에 대한 인도주의적 지원 혹은 북한 정부에 대한 직접 지원을 북한 내 인권상황의 진전과 엄격히 연계시키면서 투명성을 강화하고 있는 게 일관된 특징이다.

탈북자 문제와 관련해서는 '중국 정부는 유엔난민고등판무관실에 중국 내 탈북자들에 대한 무제한의 접근을 허용해야 한다'는 등 중국 정부에 대한 강한 권고적 내용들도 담고 있다.

이주영,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서울 종로구 명륜동 2가 8-29 3층 (110-522)
전화 : (02) 741 5363
팩스 : (02) 741 5364
이메일 : jylee0530@empal.com, humanrights@sarangbang.or.kr
홈페이지 : www.sarangbang.or.kr

1원의 작은 정성으로 만들어가는 따뜻한 사회! 엠파스 연중 캠페인 연탄메일

엠파스 인기 검색어!
혼인신고기피(↑) NLL누락보고(↑) 화씨911(55위)

200MB 엠파스 메일! 파워 업!
국내 최대 용량 200MB와 파일박스가 한

첨부파일

040721-HR 4011 EH.doc (66KB) PC에 저장 | 한디스크에 저장 | 바이러스체크 후 저장 | 파일

첨부파일

040721-USHouseofRepresentative-NKHRA.txt (76KB) PC에 저장 | 한디스크에 저장 | 바이러스체크 후 저장 | 파일

NORTH KOREAN HUMAN RIGHTS ACT OF 2004 -- (House of Representatives - July 21, 2004)
[Page: H6508]
--- Mr. LEACH. Mr. Speaker, I move to suspend the rules and pass the bill (H.R. 4011) to promote human rights and freedom i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and for other purposes, as amended.
The Clerk read as follows:
H.R. 4011
Be it enacted by the Senate and House of Representatives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in Congress assembled,
SECTION 1. SHORT TITLE.
This Act may be cited as the ``North Korean Human Rights Act of 2004''.
SEC. 2. TABLE OF CONTENTS.
The table of contents for this Act is as follows:
Sec..1..Short title.
Sec..2..Table of contents.
Sec..3..Findings.
Sec..4..Purposes.
Sec..5..Definitions.
TITLE I--PROMOTING THE HUMAN RIGHTS OF NORTH KOREANS
Sec..101..Sense of Congress regarding negotiations with North Korea.
Sec..102..Support for human rights and democracy programs.
Sec..103..Radio broadcasting to North Korea.
Sec..104..Actions to promote freedom of information.
Sec..105..United Nations Commission on Human Rights.
TITLE II--ASSISTING NORTH KOREANS IN NEED
Sec..201..Report on United States humanitarian assistance.
Sec..202..Assistance provided inside North Korea.
Sec..203..Assistance provided outside of North Korea.

TITLE III--PROTECTING NORTH KOREAN REFUGEES
Sec..301..United States policy toward refugees and defectors.
Sec..302..Eligibility for refugee or asylum consideration.
Sec..303..Facilitating submission of applications for admission as a refugee.
Sec..304..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Refugees.
Sec..305..Annual reports.
SEC. 3. FINDINGS.
Congress makes the following findings:
(1) According to the Department of State, the Government of North Korea is ``a dictatorship under the absolute rule of Kim Jong Il'' that continues to commit numerous, serious human rights abuses.
(2) The Government of North Korea attempts to control all information, artistic expression, academic works, and media activity inside North Korea and strictly curtails freedom of speech and access to foreign broadcasts.
(3) The Government of North Korea subjects all its citizens to systematic, intensive political and ideological indoctrination in support of the cult of personality glorifying Kim Jong Il and the late Kim Il Sung that approaches the level of a state religion.
(4) The Government of North Korea divides its population into categories, based on perceived loyalty to the leadership, which determines access to food, employment, higher education, place of residence, medical facilities, and other resources.
(5) According to the Department of State, ``[t]he [North Korean] Penal Code is [d]raconian, stipulating capital punishment and confiscation of assets for a wide variety of `crimes against the revolution,' including defection, attempted defection, slander of the policies of the Party or State, listening to foreign broadcasts, writing `reactionary' letters, and possessing reactionary printed matter''.
(6) The Government of North Korea executes political prisoners, opponents of the regime, some repatriated defectors, some members of underground churches, and others, sometimes at public meetings attended by workers, students, and schoolchildren.
(7) The Government of North Korea holds an estimated 200,000 political prisoners in camps that its State Security Agency manages through the use of forced labor, beatings, torture, and executions, and in which many prisoners also die from disease, starvation, and exposure.
(8) According to eyewitness testimony provided to the United States Congress by North Korean camp survivors, camp inmates have been used as sources of slave labor for the production of export goods, as targets for martial arts practice, and as experimental victims in the testing of chemical and biological poisons.
(9) According to credible reports, including eyewitness testimony provided to the United States Congress, North Korean Government officials prohibit live births in prison camps, and forced abortion and the killing of newborn babies are standard prison practices.
(10) According to the Department of State, ``[g]enuine religious freedom does not exist in North Korea'' and, according to the United States Commission on International Religious Freedom, ``[t]he North Korean state severely represses public and private religious activities'' with penalties that reportedly include arrest, imprisonment, torture, and sometimes execution.
(11) More than 2,000,000 North Koreans are estimated to have died of starvation since the early 1990s because of the failure of the centralized agricultural and public distribution systems operated by the Government of North Korea.
(12) According to a 2002 United Nations-European Union survey, nearly one out of every ten children in North Korea suffers from acute malnutrition and four out of every ten children in North Korea are chronically malnourished.
(13) Since 1995, the United States has provided more than 2,000,000 tons of humanitarian food assistance to the people of North Korea, primarily through the World Food Program.
(14) Although United States food assistance has undoubtedly saved many North Korean lives and there have been minor improvements in transparency relating to the distribution of such assistance in North Korea, the Government of North Korea continues to deny the World Food Program forms of access necessary to properly monitor the delivery of food aid, including the ability to conduct random site visits, the use of native Korean-speaking employees, and travel access throughout North Korea.
(15) The risk of starvation, the threat of persecution, and the lack of freedom and opportunity in North Korea have caused large numbers, perhaps even hundreds of thousands, of North Koreans to flee their homeland, primarily into China.
(16) North Korean women and girls, particularly those who have fled into

China, where many are sold as brides or concubines, or forced to work as prostitutes.

(17) The Governments of China and North Korea have been conducting aggressive campaigns to locate North Koreans who are in China without permission and to forcibly return them to North Korea, where they routinely face torture and imprisonment, and sometimes execution.

(18) Despite China's obligations as a party to the 1951 United Nations Convention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 and the 1967 Protocol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 China routinely classifies North Koreans seeking asylum in China as mere ``economic migrants'' and returns them to North Korea without regard to the serious threat of persecution they face upon their return.

(19) The Government of China does not provide North Koreans whose asylum requests are rejected a right to have the rejection reviewed prior to deportation despite its obligations under the 1951 United Nations Convention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 and the 1967 Protocol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

(20) North Koreans who seek asylum while in China are routinely imprisoned and tortured, and in some cases killed, after they are returned to North Korea.
[Page: H6509] (21) The Government of China has detained, convicted, and imprisoned foreign aid workers attempting to assist North Korean refugees, including the Reverend Choi Bong Il, in proceedings that did not comply with Chinese law or international standards.

(22) In January 2000, North Korean agents inside China allegedly abducted the Reverend Kim Dong-shik, a United States permanent resident and advocate for North Korean refugees, whose condition and whereabouts remain unknown.

(23) Between 1994 and 2003, South Korea has admitted approximately 3,800 North Korean refugees for domestic resettlement, a number small in comparison with the total number of North Korean escapees, but far greater than the number legally admitted by any other country.

(24) Although the principal responsibility for North Korean refugee resettlement naturally falls to the Government of South Korea, the United States should play a leadership role in focusing international attention on the plight of these refugees, and formulating international solutions to that profound humanitarian dilemma.

(25) In addition to infringing the rights of its own citizens, the Government of North Korea has been responsible in years past for the abduction of numerous citizens of South Korea and Japan, whose condition and whereabouts remain unknown.

SEC. 4. PURPOSES.

The purposes of this Act are--

(1) to promote respect for and protection of fundamental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 to promote a more durable humanitarian solution to the plight of North Korean refugees;

(3) to promote increased monitoring, access, and transparency in the provision of humanitarian assistance inside North Korea;

(4) to promote the free flow of information into and out of North Korea; and

(5) to promote progress toward the peaceful reunific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under a democratic system of government.

SEC. 5. DEFINITIONS.

In this Act:

(1) APPROPRIATE CONGRESSIONAL COMMITTEES.--The term ``appropriate congressional committees'' means--

(A) the Committee on International Relations of the House of Representatives; and

(B) the Committee on Foreign Relations of the Senate.

(2) CHINA.--The term ``China'' means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3) HUMANITARIAN ASSISTANCE.--The term ``humanitarian assistance'' means assistance to meet humanitarian needs, including needs for food, medicine, medical supplies, clothing, and shelter.

(4) NORTH KOREA.--The term ``North Korea'' means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5) NORTH KOREANS.--The term ``North Koreans'' means persons who are citizens or nationals of North Korea.

(6) SOUTH KOREA.--The term ``South Korea'' means the Republic of Korea.

TITLE I--PROMOTING THE HUMAN RIGHTS OF NORTH KOREANS

SEC. 101. SENSE OF CONGRESS REGARDING NEGOTIATIONS WITH NORTH KOREA.

It is the sense of Congress that the human rights of North Koreans should remain a key element in future negotiations between the United States, North

SEC. 102. SUPPORT FOR HUMAN RIGHTS AND DEMOCRACY PROGRAMS.

(a) Support.—The President is authorized to provide grants to private, nonprofit organizations to support programs that promote human rights, democracy, rule of law, and the development of a market economy in North Korea. Such programs may include appropriate educational and cultural exchange programs with North Korean participants, to the extent not otherwise prohibited by law.

(b) Authorization of Appropriations.—

(1) IN GENERAL.—There are authorized to be appropriated to the President $2,000,000 for each of the fiscal years 2005 through 2008 to carry out this section.

(2) AVAILABILITY.—Amounts appropriated pursuant to the authorization of appropriations under paragraph (1) are authorized to remain available until expended.

SEC. 103. RADIO BROADCASTING TO NORTH KOREA.

(a) Sense of Congress.—It is the sense of Congress that the United States should facilitate the unhindered dissemination of information in North Korea by increasing its support for radio broadcasting to North Korea, and that the Broadcasting Board of Governors should increase broadcasts to North Korea from current levels, with a goal of providing 12-hour-per-day broadcasting to North Korea, including broadcasts by Radio Free Asia and Voice of America.

(b) Report.—Not later than 120 days after the date of the enactment of this Act, the Broadcasting Board of Governors shall submit to the appropriate congressional committees a report that—

(1) describes the status of current United States broadcasting to North Korea; and

(2) outlines a plan for increasing such broadcasts to 12 hours per day, including a detailed description of the technical and fiscal requirements necessary to implement the plan.

SEC. 104. ACTIONS TO PROMOTE FREEDOM OF INFORMATION.

(a) Actions.—The President is authorized to take such actions as may be necessary to increase the availability of information inside North Korea by increasing the availability of sources of information not controlled by the Government of North Korea, including sources such as radios capable of receiving broadcasting from outside North Korea.

(b) Authorization of Appropriations.—

(1) IN GENERAL.—There are authorized to be appropriated to the President $2,000,000 for each of the fiscal years 2005 through 2008 to carry out subsection (a).

(2) AVAILABILITY.—Amounts appropriated pursuant to the authorization of appropriations under paragraph (1) are authorized to remain available until expended.

(c) Report.—Not later than 1 year after the date of the enactment of this Act, and in each of the 3 years thereafter, the Secretary of State, after consultation with the heads of other appropriate Federal departments and agencies, shall submit to the appropriate congressional committees a report, in classified form, on actions taken pursuant to this section.

SEC. 105. UNITED NATIONS COMMISSION ON HUMAN RIGHTS.

It is the sense of Congress that the United Nations has a significant role to play in promoting and improving human rights in North Korea, and that—

(1) the United Nations Commission on Human Rights (UNCHR) has taken positive steps by adopting Resolution 2003/10 and Resolution 2004/13 on the situation of human rights in North Korea, and particularly by requesting the appointment of a Special Rapporteur on the situation of human rights in North Korea; and

(2) the severe human rights violations within North Korea warrant country-specific attention and reporting by the United Nations Working Group on Arbitrary Detention, the Working Group on Enforced and Involuntary Disappearances, the Special Rapporteur on Extrajudicial, Summary, or Arbitrary Executions, the Special Rapporteur on the Right to Food, the Special Rapporteur on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the Right to Freedom of Opinion and Expression, the Special Rapporteur on Freedom of Religion or Belief, and the Special Rapporteur on Violence Against Women.

TITLE II—ASSISTING NORTH KOREANS IN NEED

SEC. 201. REPORT ON UNITED STATES HUMANITARIAN ASSISTANCE.

(a) Report.—Not later than 180 days after the date of the enactment of this Act, and in each of the 2 years thereafter, the Administrator of the United States Agency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in conjunction with the Secretary of State, shall submit to the appropriate congressional committees a report that describes—

(1) all activities to provide humanitarian assistance inside North Korea,

(2) any improvements in humanitarian transparency, monitoring, and access inside North Korea during the previous 1-year period, including progress toward meeting the conditions identified in paragraphs (1) through (4) of section 202(b); and

(3) specific efforts to secure improved humanitarian transparency, monitoring, and access inside North Korea made by the United States and United States grantees, including the World Food Program, during the previous 1-year period.

(b) Form.--The information required by subsection (a)(1) may be provided in classified form if necessary.

SEC. 202. ASSISTANCE PROVIDED INSIDE NORTH KOREA.

(a) Humanitarian Assistance Through Nongovernmental and International Organizations.--It is the sense of the Congress that--

(1) at the same time that Congress supports the provision of humanitarian assistance to the people of North Korea on humanitarian grounds, such assistance also should be provided and monitored so as to minimize the possibility that such assistance could be diverted to political or military use, and to maximize the likelihood that it will reach the most vulnerable North Koreans;

(2) significant increases above current levels of United States support for humanitarian assistance provided inside North Korea should be conditioned upon substantial improvements in transparency, monitoring, and access to vulnerable populations throughout North Korea; and

(3) the United States should encourage other countries that provide food and other humanitarian assistance to North Korea to do so through monitored, transparent channels, rather than through direct, bilateral transfers to the Government of North Korea.

(b) Humanitarian Assistance to the Government of North Korea.--No department, agency, or entity of the United States Government may provide humanitarian assistance to any department, agency, or entity of the Government of North Korea unless such United States Government department, agency, or entity certifies in writing to the appropriate congressional committees that the Government of North Korea has taken steps to ensure that--

(1) such assistance is delivered, distributed, and monitored according to internationally recognized humanitarian standards;

(2) such assistance is provided on a needs basis, and is not used as a political reward or tool of coercion;

(3) such assistance reaches the intended beneficiaries, who are informed of the source of the assistance; and

[Page: H6510] (4) humanitarian access to all vulnerable groups in North Korea is allowed, no matter where in the country they may be located.

(c) Nonhumanitarian Assistance to the Government of North Korea.--No department, agency, or entity of the United States Government may provide nonhumanitarian assistance to any department, agency, or entity of the Government of North Korea unless such United States Government department, agency, or entity certifies in writing to the appropriate congressional committees that the Government of North Korea has made substantial progress toward--

(1) respecting and protecting basic human rights, including freedom of religion, of the people of North Korea;

(2) providing for significant family reunification between North Koreans and their descendants and relatives in the United States;

(3) fully disclosing all information regarding citizens of Japan and the Republic of Korea abducted by the Government of North Korea;

(4) allowing such abductees, along with their families, complete and genuine freedom to leave North Korea and return to the abductees' original home countries;

(5) significantly reforming its prison and labor camp system, and subjecting such reforms to independent international monitoring; and

(6) decriminalizing political expression and activity.

(d) Waiver.--The President may waive the prohibition contained in subsection (b) or (c) if the President determines that it is in the national security interest of the United States to do so. Prior to exercising the waiver authority contained in the preceding sentence, the President shall transmit to the appropriate congressional committees a report that contains the determination of the President pursuant to the preceding sentence and a description of the assistance to be provided.

SEC. 203. ASSISTANCE PROVIDED OUTSIDE OF NORTH KOREA.

(a) Assistance.--The President is authorized to provide assistance to support organizations or persons that provide humanitarian assistance to North Koreans who are outside of North Korea without the permission of the Government

(b) Types of Assistance.—Assistance provided under subsection (a) should be used to provide—

(1) humanitarian assistance to North Korean refugees, defectors, migrants, and orphans outside of North Korea, which may include support for refugee camps or temporary settlements; and

(2) humanitarian assistance to North Korean women outside of North Korea who are victims of trafficking, as defined in section 103(14) of the Trafficking Victims Protection Act of 2000 (22 U.S.C. 7102(14)), or are in danger of being trafficked.

(c) Authorization of Appropriations.—

(1) IN GENERAL.—In addition to funds otherwise available for such purposes, there are authorized to be appropriated to the President $20,000,000 for each of the fiscal years 2005 through 2008 to carry out this section.

(2) AVAILABILITY.—Amounts appropriated pursuant to the authorization of appropriations under paragraph (1) are authorized to remain available until expended.

TITLE III—PROTECTING NORTH KOREAN REFUGEES

SEC. 301. UNITED STATES POLICY TOWARD REFUGEES AND DEFECTORS.

(a) Report.—Not later than 120 days after the date of the enactment of this Act, the Secretary of State, in consultation with the heads of other appropriate Federal departments and agencies, shall submit to the appropriate congressional committees and the Committees on the Judiciary of the House of Representatives and the Senate a report that describes the situation of North Korean refugees and explains United States Government policy toward North Korean nationals outside of North Korea.

(b) Contents.—The report shall include—

(1) an assessment of the circumstances facing North Korean refugees and migrants in hiding, particularly in China, and of the circumstances they face if forcibly returned to North Korea;

(2) an assessment of whether North Koreans in China have effective access to personnel of the 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Refugees, and of whether the Government of China is fulfilling its obligations under the 1951 Convention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 particularly Articles 31, 32, and 33 of such Convention;

(3) an assessment of whether North Koreans presently have unobstructed access to United States refugee and asylum processing, and of United States policy toward North Koreans who may present themselves at United States embassies or consulates and request protection as refugees or asylum seekers and resettlement in the United States;

(4) the total number of North Koreans who have been admitted into the United States as refugees or asylees in each of the past five years;

(5) an estimate of the number of North Koreans with family connections to United States citizens; and

(6) a description of the measures that the Secretary of State is taking to carry out section 303.

(c) Form.—The information required by paragraphs (1) through (5) of subsection (b) shall be provided in unclassified form. All or part of the information required by subsection (b)(6) may be provided in classified form, if necessary.

SEC. 302. ELIGIBILITY FOR REFUGEE OR ASYLUM CONSIDERATION.

(a) Purpose.—The purpose of this section is to clarify that North Koreans are not barred from eligibility for refugee status or asylum in the United States on account of any legal right to citizenship they may enjoy under the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It is not intended in any way to prejudice whatever rights to citizenship North Koreans may enjoy under the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or to apply to former North Korean nationals who have availed themselves of those rights.

(b) Treatment of Nationals of North Korea.—For purposes of eligibility for refugee status under section 207 of the Immigration and Nationality Act (8 U.S.C. 1157), or for asylum under section 208 of such Act (8 U.S.C. 1158), a national of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shall not be considered a national of the Republic of Korea.

SEC. 303. FACILITATING SUBMISSION OF APPLICATIONS FOR ADMISSION AS A REFUGEE.

The Secretary of State shall undertake to facilitate the submission of applications under section 207 of the Immigration and Nationality Act (8 U.S.C. 1157) by citizens of North Korea seeking protection as refugees (as defined in section 101(a)(42) of such Act (8 U.S.C. 1101(a)(42)).

SEC. 304. 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REFUGEES.

(1) the Government of China has obligated itself to provide the 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Refugees (UNHCR) with unimpeded access to North Koreans inside its borders to enable the UNHCR to determine whether they are refugees and whether they require assistance, pursuant to the 1951 United Nations Convention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 the 1967 Protocol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 and Article III, paragraph 5 of the 1995 Agreement on the Upgrading of the UNHCR Mission in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to UNHCR Branch Office in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referred to in this section as the ``UNHCR Mission Agreement'');

(2) the United States, other UNHCR donor governments, and UNHCR should persistently and at the highest levels continue to urge the Government of China to abide by its previous commitments to allow UNHCR unimpeded access to North Korean refugees inside China;

(3) the UNHCR, in order to effectively carry out its mandate to protect refugees, should liberally employ as professionals or Experts on Mission persons with significant experience in humanitarian assistance work among displaced North Koreans in China;

(4) the UNHCR, in order to effectively carry out its mandate to protect refugees, should liberally contract with appropriate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that have a proven record of providing humanitarian assistance to displaced North Koreans in China;

(5) the UNHCR should pursue a multilateral agreement to adopt an effective ``first asylum'' policy that guarantees safe haven and assistance to North Korean refugees; and

(6) should the Government of China begin actively fulfilling its obligations toward North Korean refugees, all countries, including the United States, and relevant international organizations should increase levels of humanitarian assistance provided inside China to help defray costs associated with the North Korean refugee presence.

(b) Arbitration Proceedings.--It is further the sense of Congress that--

(1) if the Government of China continues to refuse to provide the UNHCR with access to North Koreans within its borders, the UNHCR should initiate arbitration proceedings pursuant to Article XVI of the UNHCR Mission Agreement and appoint an arbitrator for the UNHCR; and

(2) because access to refugees is essential to the UNHCR mandate and to the purpose of a UNHCR branch office, a failure to assert those arbitration rights in present circumstances would constitute a significant abdication by the UNHCR of one of its core responsibilities.

SEC. 305. ANNUAL REPORTS.

(a) Immigration Information.--Not later than 1 year after the date of the enactment of this Act, and every 12 months thereafter for each of the following 5 years, the Secretary of State and the Secretary of Homeland Security shall submit a joint report to the appropriate congressional committees and the Committees on the Judiciary of the House of Representatives and the Senate on the operation of this title during the previous year, which shall include--

(1) the number of aliens who are nationals or citizens of North Korea who applied for political asylum and the number who were granted political asylum; and

(2) the number of aliens who are nationals or citizens of North Korea who applied for refugee status and the number who were granted refugee status.

(b) Countries of Particular Concern.--The President shall include in each annual report on proposed refugee admission pursuant to section 207(d) of the Immigration and Nationality Act (8 U.S.C. 1157(d)), information about specific measures taken to facilitate access to the United States refugee program for individuals who have fled countries

[Page: H6511]of particular concern for violations of religious freedom, identified pursuant to section 402(b) of the International Religious Freedom Act of 1998 (22 U.S.C. 6442(b)). The report shall include, for each country of particular concern, a description of access of the nationals or former habitual residents of that country to a refugee determination on the basis of--

(1) referrals by external agencies to a refugee adjudication;

(2) groups deemed to be of special humanitarian concern to the United States for purposes of refugee resettlement; and

(3) family links to the United States.

The SPEAKER pro tempore (Mr. Ose). Pursuant to the rule, the gentleman from Iowa (Mr. Leach) and the gentleman from California (Mr. Lantos) each will control 20 minutes.

The Chair recognizes the gentleman from Iowa (Mr. Leach).

GENERAL LEAVE

Mr. LEACH. Mr. Speaker, I ask unanimous consent that all Members may have 5 legislative days within which to revise and extend their remarks and include

extraneous material on H.R. 4011, as amended.

The SPEAKER pro tempore. Is there objection to the request of the gentleman from Iowa?

There was no objection.

Mr. LEACH. Mr. Speaker, I yield myself such time as I may consume.

Mr. Speaker, during the past 2 1/2 years, the Subcommittee on Asia and the Pacific has received testimony from a number of North Koreans who have survived some of the greatest rigors of the human condition. Their accounts buttress the growing awareness that the people of North Korea have endured some of the most acute humanitarian traumas of our time.

Inside North Korea, they suffer at the hands of a totalitarian dynasty that permits no dissent and strictly curtails freedoms of speech, press, religion, and assembly. The regime maintains a brutal system of prison camps that house an estimated 200,000 political inmates who are subjected to slave labor, torture, and even lethal chemical experimentation. Since the collapse of the centralized agricultural system in the 1990s, more than 2 million North Koreans are estimated to have died of starvation.

North Koreans outside of North Korea are also uniquely vulnerable. Many thousands are hiding inside China, which currently refuses the U.N. High Commissioner for Refugees to evaluate and identify genuine refugees among the North Korean migrant population. China forcibly returns North Koreans to North Korea, where they routinely face imprisonment and torture and sometimes execution. Inside China, North Korean women and girls are particularly vulnerable to trafficking in sexual exploitation.

Provoked by these crises, this broadly bipartisan legislation aims to promote international cooperation on human rights and refugee protection, and increased transparency in the provision of humanitarian assistance to the people of North Korea.

On the human rights front, this bill underscores the importance of human rights issues in future negotiations with North Korea. It authorizes funds for programs to promote human rights, democracy, rule of law, a market economy, and freedom of information. It also urges additional North Korea-specific attention by appropriate U.N. human rights authorities.

On the humanitarian front, the bill authorizes increased funding for assistance to North Koreans outside of North Korea, including refugees, orphans, and trafficking victims. It endorses, but also seeks, greater transparency, for the delivery of U.S. humanitarian aid inside North Korea. Finally, it would condition direct assistance to the North Korean government on human rights and transparency benchmarks, but allows the President to waive those restrictions for national security purposes.

In terms of refugee protection, the bill requires a formal clarification of U.S. policy and affirms the eligibility of North Koreans to seek protection as refugees under U.S. law. It also urges the U.N. High Commissioner For Refugees to use all available means to gain access to North Koreans in China. Although the principal responsibility for North Korean refugee resettlement naturally falls to the government of South Korea, the United States should play a leadership role in focusing international attention on the plight of those refugees in formulating international solutions to their profound humanitarian dilemma.

I want to remove any danger that overseas audiences may misunderstand the intent or content of this bill. Allow me to state unequivocally, this legislation is a purely humanitarian endeavor. There are no hidden agendas. Indeed, the committee of jurisdiction is deeply indebted to the concerns expressed by thousands of American citizens of Korean descent who are convinced that for too long the international community has largely ignored the plight of their brethren in the North.

As explained in the report of the Committee on International Relations: ``H.R. 4011 is motivated by a genuine desire for improvements in human rights, refugee protection, and humanitarian transparency. It is not a pretext for a hidden strategy to provoke regime collapse or to seek collateral advantage in ongoing strategic negotiations. While the legislation highlights numerous egregious abuses, the Congress remains willing to recognize progress in the future and hopes for such an opportunity.''

Similarly, with regard to China, this bill is not solely critical; it is also aspirational. It makes clear that the United States and the international community stand ready to provide more assistance to help defray the costs associated with the North Korean migrant presence when China begins fulfilling its obligations as a party to the 1951 U.N. Refugee Convention. We genuinely hope for that opportunity to arise.

I would like to thank my colleagues for their strong bipartisan endorsement of this bill. In particular, I would like to express my gratitude to the staff

of the Committee on International Relations and Committee on the Judiciary, particularly Doug Anderson, for their expert consideration, and to the House leadership for promptly scheduling this important legislation.

Our distinguished ranking member, the gentleman from California (Mr. Lantos); the distinguished ranking member of the subcommittee, the gentleman from American Samoa (Mr. Faleomavaega); the gentleman from New York (Mr. Ackerman); and the gentleman from California (Mr. Berman) of the minority are much appreciated, as is the leadership of the gentleman from New Jersey (Mr. Smith), the gentleman from California (Mr. Cox); and the gentleman from California (Mr. Royce) on the majority side.

Finally I would like to thank Senator Brownback, whose leadership in the other body has both informed and helped inspire House action on these issues.

H.R. 4011 is a responsible, creative approach to an ongoing human tragedy and deserves our unanimous support.

Mr. Speaker, I include for the RECORD an exchange of letters between the gentleman from Illinois (Chairman Hyde) and the gentleman from Wisconsin (Chairman Sensenbrenner) on the bill under discussion.

Committee on International Relations, House of Representatives,
Washington, DC, July 16, 2004.
Hon. F. JAMES SENSENBRENNER, Jr.,
Chairman, Committee on the Judiciary, Rayburn House Office Building, Washington, DC.

DEAR CHAIRMAN SENSENBRENNER: Thank you for your letter regarding H.R. 4011, the ``North Korean Human Rights Act of 2004,'' which was primarily referred to the Committee on International Relations and additionally to the Committee on the Judiciary. This Committee ordered the bill reported favorably on March 31, 2004, and filed its report (H. Rept. No. 108-478, Part I) on May 4, 2004.

I concur that the Committee on the Judiciary has jurisdiction over the immigration provisions contained in Title III of the bill. I am grateful for the cooperation of the Committee on the Judiciary in crafting a mutually agreeable compromise text. Based on these discussions, the manager's amendment which the Committee will call up under suspension of the rules will be the text attached to your letter.

I appreciate your willingness to waive further consideration of the bill in the Committee on the Judiciary. I concur that in taking this action your Committee's jurisdiction over the bill is in no way diminished or altered. I will, as you request, include this exchange of letters in the Congressional Record during consideration of the legislation on the House floor.

I appreciate your cooperation in this matter.

Sincerely,
Henry J. Hyde,
Chairman.

[Page: H6512]-- HOUSE OF REPRESENTATIVES,
COMMITTEE ON THE JUDICIARY,
Washington, DC, July 15, 2004.
Hon. HENRY HYDE,
Chairman, Committee on International Relations, House of Representatives, Washington, DC.

DEAR CHAIRMAN HYDE: I am writing regarding H.R. 4011, the ``North Korean Human Rights Act of 2004'' which was referred primarily to the Committee on International Relations and additionally to the Committee on the Judiciary. The Committee on International Relations reported the bill favorably on May 4, 2004. H. Rept. No. 108-478, Part I. The Committee on the Judiciary's secondary referral is currently scheduled to expire on July 16, 2004.

I had significant concerns about the immigration provisions contained in Title III on the bill as introduced which fall within the Rule X jurisdiction of the Committee on the Judiciary. My staff has had discussions with yours, and they have reached a mutually agreeable compromise to resolve these concerns. A copy of the compromise language is attached. I understand that through staff discussions you have indicated your willingness to take the bill to the floor under suspension of the rules and use the attached compromise language as the manager's amendment when you do so.

Based on your agreement to follow this course, I agree to waive further consideration of the bill in the Committee on the Judiciary so that the bill may proceed to the floor. The Committee on the Judiciary takes this action with the understanding that the Committee's jurisdiction over the bill is in no way diminished or altered. I would appreciate your including this letter and your response in the Congressional Record during consideration of the legislation on the House floor.

I appreciate your cooperation in this matter.

Sincerely,

F. James Sensenbrenner, Jr.,
Chairman.
H.R. 4011
Be it enacted by the Senate and House of Representatives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in Congress assembled,
SECTION 1. SHORT TITLE.
This Act may be cited as the ``North Korean Human Rights Act of 2004''.
SEC. 2. TABLE OF CONTENTS.
The table of contents for this Act is as follows:
Sec..1..Short title.
Sec..2..Table of contents.
Sec..3..Findings.
Sec..4..Purposes.
Sec..5..Definitions.
TITLE I--PROMOTING THE HUMAN RIGHTS OF NORTH KOREANS
Sec..101..Sense of Congress regarding negotiations with North Korea.
Sec..102..Support for human rights and democracy programs.
Sec..103..Radio broadcasting to North Korea.
Sec..104..Actions to promote freedom of information.
Sec..105..United Nations Commission on Human Rights.
TITLE II--ASSISTING NORTH KOREANS IN NEED
Sec..201..Report on United States humanitarian assistance.
Sec..202..Assistance provided inside North Korea.
Sec..203..Assistance provided outside of North Korea.
TITLE III--PROTECTING NORTH KOREAN REFUGEES
Sec..301..United States policy toward refugees and defectors.
Sec..302..Eligibility for refugee or asylum consideration.
Sec..303..Facilitating submission of applications for admission as a refugee.
Sec..304..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Refugees.
Sec..305..Annual reports.
SEC. 3. FINDINGS.
Congress makes the following findings:
(1) According to the Department of State, the Government of North Korea is ``a dictatorship under the absolute rule of Kim Jong Il'' that continues to commit numerous, serious human rights abuses.
(2) The Government of North Korea attempts to control all information, artistic expression, academic works, and media activity inside North Korea and strictly curtails freedom of speech and access to foreign broadcasts.
(3) The Government of North Korea subjects all its citizens to systematic, intensive political and ideological indoctrination in support of the cult of personality glorifying Kim Jong Il and the late Kim Il Sung that approaches the level of a state religion.
(4) The Government of North Korea divides its population into categories, based on perceived loyalty to the leadership, which determines access to food, employment, higher education, place of residence, medical facilities, and other resources.
(5) According to the Department of State, ``[t]he [North Korean] Penal Code is [d]raconian, stipulating capital punishment and confiscation of assets for a wide variety of `crimes against the revolution,' including defection, attempted defection, slander of the policies of the Party or State, listening to foreign broadcasts, writing `reactionary' letters, and possessing reactionary printed matter''.
(6) The Government of North Korea executes political prisoners, opponents of the regime, some repatriated defectors, some members of underground churches, and others, sometimes at public meetings attended by workers, students, and schoolchildren.
(7) The Government of North Korea holds an estimated 200,000 political prisoners in camps that its State Security Agency manages through the use of forced labor, beatings, torture, and executions, and in which many prisoners also die from disease, starvation, and exposure.
(8) According to eyewitness testimony provided to the United States Congress by North Korean camp survivors, camp inmates have been used as sources of slave labor for the production of export goods, as targets for martial arts practice, and as experimental victims in the testing of chemical and biological poisons.
(9) According to credible reports, including eyewitness testimony provided to the United States Congress, North Korean Government officials prohibit live births in prison camps, and forced abortion and the killing of newborn babies are standard prison practices.
(10) According to the Department of State, ``[g]enuine religious freedom does not exist in North Korea'' and, according to the United States Commission on International Religious Freedom, ``[t]he North Korean state severely

represses public and private religious activities with penalties that reportedly include arrest, imprisonment, torture, and sometimes execution.

(11) More than 2,000,000 North Koreans are estimated to have died of starvation since the early 1990s because of the failure of the centralized agricultural and public distribution systems operated by the Government of North Korea.

(12) According to a 2002 United Nations-European Union survey, nearly one out of every ten children in North Korea suffers from acute malnutrition and four out of every ten children in North Korea are chronically malnourished.

(13) Since 1995, the United States has provided more than 2,000,000 tons of humanitarian food assistance to the people of North Korea, primarily through the World Food Program.

(14) Although United States food assistance has undoubtedly saved many North Korean lives and there have been minor improvements in transparency relating to the distribution of such assistance in North Korea, the Government of North Korea continues to deny the World Food Program forms of access necessary to properly monitor the delivery of food aid, including the ability to conduct random site visits, the use of native Korean-speaking employees, and travel access throughout North Korea.

(15) The risk of starvation, the threat of persecution, and the lack of freedom and opportunity in North Korea have caused large numbers, perhaps even hundreds of thousands, of North Koreans to flee their homeland, primarily into China.

(16) North Korean women and girls, particularly those who have fled into China, are at risk of being kidnapped, trafficked, and sexually exploited inside China, where many are sold as brides or concubines, or forced to work as prostitutes.

(17) The Governments of China and North Korea have been conducting aggressive campaigns to locate North Koreans who are in China without permission and to forcibly return them to North Korea, where they routinely face torture and imprisonment, and sometimes execution.

(18) Despite China's obligations as a party to the 1951 United Nations Convention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 and the 1967 Protocol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 China routinely classifies North Koreans seeking asylum in China as mere ``economic migrants'' and returns them to North Korea without regard to the serious threat of persecution they face upon their return.

(19) The Government of China does not provide North Koreans whose asylum requests are rejected a right to have the rejection reviewed prior to deportation despite its obligations under the 1951 United Nations Convention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 and the 1967 Protocol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

(20) North Koreans who seek asylum while in China are routinely imprisoned and tortured, and in some cases killed, after they are returned to North Korea.

(21) The Government of China has detained, convicted, and imprisoned foreign aid workers attempting to assist North Korean refugees, including the Reverend Choi Bong Il, in proceedings that did not comply with Chinese law or international standards.

(22) In January 2000, North Korean agents inside China allegedly abducted the Reverend Kim Dong-shik, a United States permanent resident and advocate for North Korean refugees, whose condition and whereabouts remain unknown.

(23) Between 1994 and 2003, South Korea has admitted approximately 3,800 North Korean refugees for domestic resettlement, a number small in comparison with the total number of North Korean escapees, but far greater than the number legally admitted by any other country.

(24) Although the principal responsibility for North Korean refugee resettlement naturally falls to the Government of South Korea, the United States should play a leadership role in focusing international attention on the plight of these refugees, formulating international solutions to that profound humanitarian dilemma.

[Page: H6513] (25) In addition to infringing the rights of its own citizens, the Government of North Korea has been responsible in years past for the abduction of numerous citizens of South Korea and Japan, whose condition and whereabouts remain unknown.

SEC. 4. PURPOSES.

The purposes of this Act are—

(1) to promote respect for and protection of fundamental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 to promote a more durable humanitarian solution to the plight of North Korean refugees;

(3) to promote increased monitoring, access, and transparency in the provision of humanitarian assistance inside North Korea;